

이젠
우리 인권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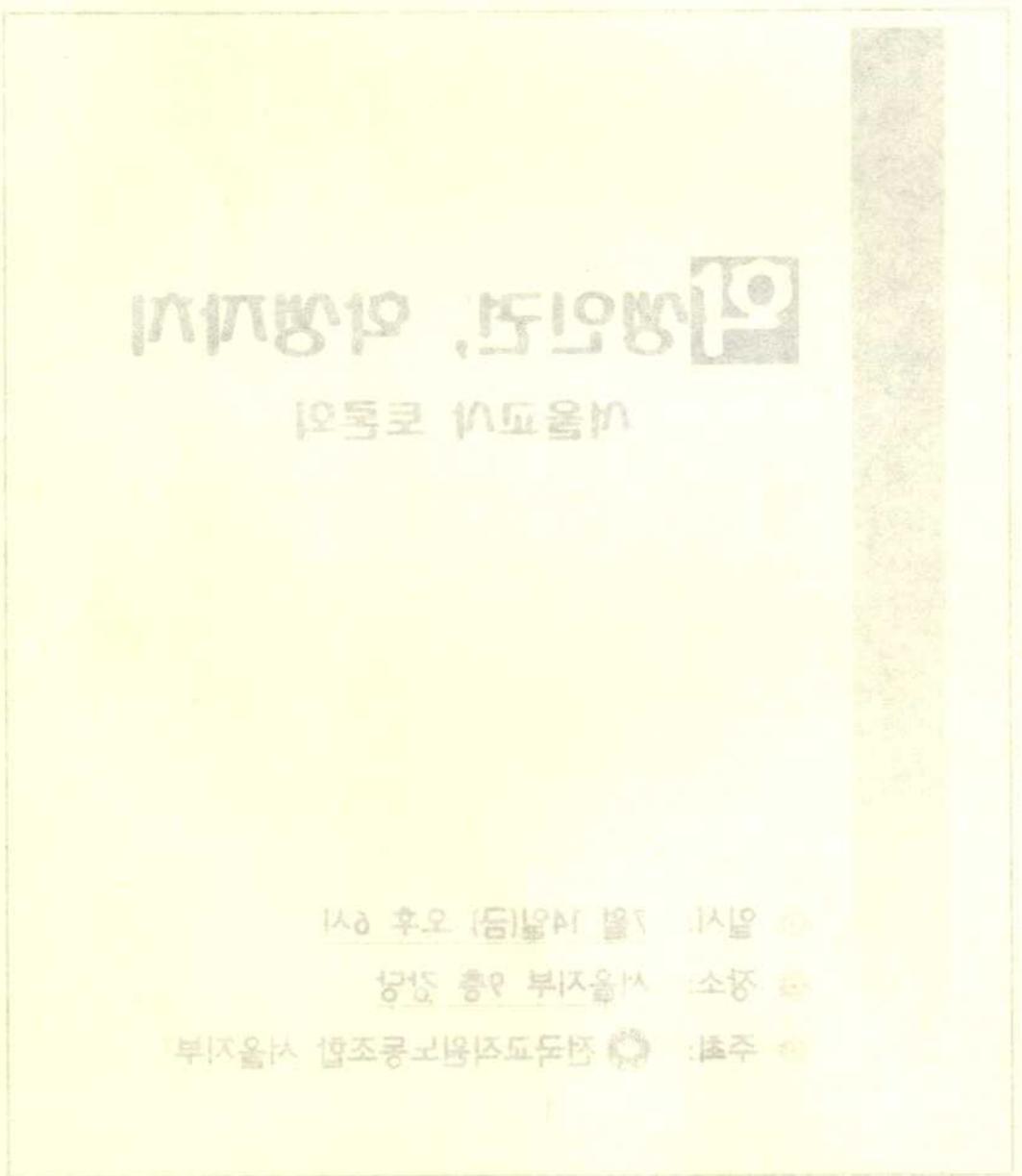
**악생인권, 악생파지
서울교사 토론회**

- 일시: 7월 14일(금) 오후 6시
- 장소: 서울지부 9층 강당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젠
우리 인권을

악생인권, 악생자치 서울교사 토론회

- 일시: 7월 14일(금) 오후 6시
- 장소: 서울지부 9층 강당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여는 글	2
[발제1] 학생인권 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4
[발제2]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자!	12
[토론1] 학생 용의복장 지도의 교육적 의미	32
[토론2] 학생자치 권리의 제도적으로 보장하자!	50
[토론3] 학교에서의 인권의 중요성	61
[참고1] 인권교육의 필요성	66
[참고2] 학교와 학생 인권, 그리고 교사의 역할	71
[참고3] 학생인권법안 발의 경과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89
[참고4] <성명서>동성고 오병현 학생 징계사건 해결촉구 교육청 항의 방문	93



학생인권, 학생자치 토론회를 열며

전교조 서울지부장 정 진 화

인권과 평화가 사람 사는 기본 권리이자 가치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도처에서 인권과 평화가 짓밟히고 무시되는 일들을 날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일으키는 침략 전쟁이 그칠 날 없고 소수자와 약한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 고통 받고 눈물짓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러한 일들을 아이들과 함께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새로운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랜 관행과 규정, 맑은 학교 문화에서 비롯된 학생 인권의 문제를 주목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근대 한국 사회의 학교는 봉건적 질서에 더해 일제 식민지기의 경험이 남긴 이중의 굴레로 말미암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지금까지도 그 안에 온존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광화문 거리에서 터져 나왔던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에 대한 외침, 2006년 역시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종이비행기에 일제히 실린 학생 자유와 두발 자유화에 대한 열망, 최근 학생 인권 보장 일인시위를 벌인 오병현군 사건에서 보듯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우리 학생들의 요구는 이제야말로 진지하게 우리 교사들이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체벌과 두발 제한, 소지품 검사, 그리고 교문 지도 등 통제와 적발을 위한 학생 인권 침해의 덫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학교가 믿음과 상호 존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신체의 자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



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내고 또한 이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학생회와 학생자치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훈련과 과정에 대한 경험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초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가늠 짓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학생회 임원을 선거로 뽑아도, 학생회의 시간이 교과수업에 밀려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어떠한 건의도 학교에 반영되지 않는 껍데기 학생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학교의 주체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제안하는 학생 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회가 법적 기구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둘러싼 논의를 먼저 우리 선생님들부터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입법 발의된 학생 인권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축하합니다.

학생들이 존중되지 않는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리지 않는 학교는 이미 죽은 학교입니다. 살아있는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일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살아 움직이는 자치활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참교육의 터전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셔서 기坦없이 의견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제 1

서울지부 학생인권법안 의식 실태 조사 보고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학생생활국-

■ 조사 목적

지난 3월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생인권 의식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실천한다.

■ 조사 내용

학생인권법안 내용

■ 조사 기간 : 2006년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 조사 대상 : 서울지역 학생 779명, 학부모 210명, 교사 202명

■ 조사 방법 : 설문지

<학생인권법안 인지도>

1. 학생인권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예	142(18.23%)	94(44.76%)	64(31.68%)
② 아니오	637(81.77%)	116(55.24%)	138(68.32%)
소계	779명	210명	202명

2. 법률안의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았는가?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예	73(9.06%)	60(28.71%)	4(1.99%)
② 아니오	703(90.94%)	149(71.29%)	197(98.01%)
소계	776명	209명	202명

=> 학생인권법안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직까지 학생인권법안이 지니고 있는 의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거나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3.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매우 그렇다	10(1.29%)	3(1.68%)	2(1.01%)
② 어느정도 그렇다	245(31.57%)	92(51.40%)	96(48.48%)
③ 아니다	233(30.03%)	44(24.58%)	65(32.83%)

④ 몹시 아니다	187(24.10%)	10(5.59%)	24(12.12%)
⑤ 잘 모르겠다.	101(13.02%)	30(16.76%)	11(5.56%)
소계	776명	178명	198명

=>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우선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은 54%이상이 학생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한 반면, 학부모와 교사는 50% 내외가 '그렇다'에 답을 하여 학생과 어른사이의 체감도가 달라 상호 간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 다섯 개를 고른다면.

(1) 학생(응답자수 : 779명)

순위	응답 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률
1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	647	83.06%
2	체벌	397	50.96%
3	교문지도	301	38.64%
4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미반영	295	37.87%
5	강제적인 0교시, 야간 자율학습	289	37.10%
기타	임원 자격 성적 제한 (229명-29.39%), 학생회·동아리 활동 지원 부재 또는 미비(227명-34.65%), 소지품검사(220명-28.24%), 복지시설 부족(177명-22.72%) 징계 내용과 절차(162명-20.79%), 학생회 예산 결정권 없음(157명-20.15%), 대의원회 결과 또는 건의사항 처리(139명-17.84%),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불참(120명-25.67%), 일기검사(86명-11.03%), 특정종교 강요(82명-10.52%), 전교 회장·부회장 성별 구분(73명-92.40%), 장애 학생이 배제된 학교(67명-8.60%), 짐회 및 사회단체 활동 금지(52명-6.67%)		

(2) 학부모(응답자수 : 210명)

순위	응답 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률
1	체벌	86	40.95%
2	복지시설 부족	86	40.95%
3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	75	35.71%
4	강제적인 0교시, 야간 자율학습	66	31.43%
5	임원 자격 성적 제한	64	30.48%
기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미반영 (53명-25.23%), 학생회·동아리 활동 지원 부재 또는 미비(49명-23.33%), 특정종교 강요(47명-22.38%), 소지품검사(43명-20.47%), 장애 학생이 배제된 학교(39명-18.57%), 교문지도(35명-16.67%), 징계 내용과 절차(32명-15.24%), 일기검사(32명-15.24%),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불참(24명-11.43%), 학교 회장·부회장 성별 구분(23명-10.95%), 학생회 예산 결정권 없음(22명-10.47%), 대의원회 결과 또는 건의사항 처리(21명-10.00%), 짐회 및 사회단체 활동 금지(16명-7.61%)		

(3) 교사(응답자수 : 202명)

순위	응답 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률
1	복지시설 부족	99	49.01%
2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	86	42.57%
3	학생회 예산 결정권 없음	76	37.62%
4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미반영	72	35.64%



5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불참	69	34.16%
기타	체벌(66-32.67%), 강제적인 0교시, 야간 자율학습 (60명-29.70%), 교문지도(52명-25.74%), 대의원회 결과 또는 건의사항 처리(52명-25.74%), 특정종교강요(51명-25.24%), 소지품검사(49명-24.25%), 장애 학생이 배제된 학교(31명-15.34%), 임원자격 성적제한(25명-12.37%), 일기검사(22명-10.89%), 학생회.동아리 활동 지원 부재 또는 미비(18명-8.91%), 집회 및 사회단체 활동 금지(18명-8.91%), 학생회 예산 결정권 없음(22명-10.89%), 징계 내용과 절차(16명-7.92%), 학교 회장·부회장 성별 구분(12명-5.94%)		

=>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인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조항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 수준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두발 및 용의 복장 규정에 대해서는 학생 80.36%, 학부모 40.95%, 교사 42.57%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생은 매우 높게 나타나 두발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벌에 대해서는 학생 2순위(50.96%), 학부모 1순위(40.95%)로 모두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는 순위에서는 조금 뒤지나 비중 있는 수치(32.67%)로 나타나 교사 역시 체벌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제적인 0교시와 자율학습 금지는 학생 37.10%, 학부모 31.43%, 교사가 29.7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집회 및 사회단체활동 금지와 장애학생이 배제된 학교 부분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무척 낮은 수치를 기록해 청소년의 의사 표현 및 사회 활동 보장과 장애 학우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들어 동성고 오병현 군에 대한 징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징계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사는 무척 낮게 나타났고 학생은 그해 비해 조금 높은 수치로 선택을 했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불참에 대해 교사는 34.16%로 학생 25.67%, 학부모 11.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교사는 학교라는 자치구조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생활 규정 개정시 학생 의견 미반영에 대해 학생 37.87%, 교사 35.64%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또한 25.23%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복지시설 부족 부문에서는 교사 1순위(49.01%), 학부모 1순위(40.95%)로 모두 매우 높은 순위로 선택을 하여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학생(9순위, 22.72%)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은 복지시설 부족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에서 높은 순위를 선택하여 학교에서 복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낮음을 드러냈다.

5.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 모두 고르기

(1) 학생(응답자수 : 779명)

순위	응답 항 목	응답자수(명)	응답률
1	교문지도	214	27.47%
2	대의원회 결과 또는 건의사항 처리	210	26.96%
3	복지시설 부족	180	23.11%
4	장애 학생이 배제된 학교	168	21.57%

5	일기검사	156	20.03%
기타	학생회.동아리 활동 지원 부재 또는 미비(141명-18.10%), 전교 회장·부회장 성별 구분(143명-18.35%), 체벌(121명-15.53%), 학생회 예산 결정권 없음(114명-14.63%), 임원자격 성적제한(112명-14.37%),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불참(106명-13.60%), 소지품검사(103명-13.22%), 징계 내용과 절차(102명-13.09%), 강제적인 0교시·야간자율학습(100명-12.83%), 집회 및 사회단체 활동 금지(97명-12.45%), 특정종교강요(82명-10.52%), 대의원회 결과 또는 건의사항 처리(21명-2.69%),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미반영(47명-6.03%),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47명-6.03%),		

(2) 학부모(응답자수 : 210명)

순위	응답 항 목	응답자수(명)	응답률
1	교문지도	56	26.67%
1	두발 및 용의복장규정	51	24.29%
3	일기검사	34	16.19%
4	학생회 동아리 활동, 지원미비	28	13.33%
기타	징계 내용과 절차(26명-12.38%),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불참(26명-12.38%), 집회 및 사회단체 활동 금지(25명-11.90%), 소지품검사(24명-11.42%), 임원 자격 성적 제한(22명-10.47%), 강제적인 0교시, 야간 자율학습(22명-10.47%), 전교 회장·부회장 성별 구분(20명-9.52%), 학생회 예산 결정권 없음(19명-9.04%), 체벌(19명-9.04%), 대의원회 결과 또는 건의사항 처리(19명-9.04%), 복지시설부족(17명-8.09%), 장애 학생이 배제된 학교(16명-7.61%), 특정종교강요(16명-7.61%),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미반영(9명-4.28%)		

(3) 교사(응답자수 : 202명)

순위	응답 항 목	응답자수(명)	응답률
1	교문지도	43	21.29%
2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	37	18.32%
2	징계내용과 절차	37	18.32%
4	일기검사	24	11.88%
5	복지시설부족	23	11.39%
기타	체벌(22명-10.89%),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불참 (22명-10.89%), 집회 및 사회단체 활동 금지(19명-9.40%), 소지품검사(18명-8.91%), 학생회 예산 결정권 없음(18명-8.91%), 대의원회 결과 또는 건의사항 처리(10명-4.95%), 특정종교강요(2명-0.994%), 소지품검사(18명-8.91%), 임원자격 성적제한(16명-7.92%), 전교 회장·부회장 성별 구분(14명-6.93%),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미반영(10명-4.95%), 장애 학생이 배제된 학교(6명-2.97%), 강제적인 0교시·야간자율학습(6명-2.97%), 학생회.동아리 활동 지원 부재 또는 미비(2명-2.97%)		

=>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교문 지도는 학생들이 인권 침해 사항에서 3순위를 차지했는데, '아니다'라는 사항에서도 1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문지도에 대한 인식이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기검사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은 복지 시설 부족과 대의원회 결과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를 높은 순위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학교에 대한 기대 수준과 권리 의식이 매우 낮음을 반영한다.

학부모(1순위, 24.29%)와 교사(2순위, 18.32%)는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을 높은 순위로 선택해 학생과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는 어른(학부모, 교사)의 입장은 잘 보여준다.



발제 1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다르게 징계 내용과 절차를 높은 수위로 선택을 하였고 학부모는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선택한 것이 흥미롭다.

<학생 인권법 안 지지>

6.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에 대하여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매우 찬성	337(43.82%)	34(19.54%)	49(24.62%)
② 찬성	288(37.45%)	115(66.09%)	93(46.73%)
③ 잘 모름	133(17.30%)	23(13.22%)	36(18.09%)
④ 반대	8(1.04%)	2(1.15%)	15(7.54%)
⑤ 몹시 반대	3(0.39%)	0(0.00%)	6(3.02%)
소계	769명	174명	199명

7. 학생회를 법제화할 경우 총학생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 모두 고른다면?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60(20.17%)	83(20.75%)	134(19.20%)
② 학칙 중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	486(27.23%)	107(26.75%)	150(21.49%)
③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188(10.53%)	46(11.50%)	47(6.73%)
④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20(12.32%)	54(13.50%)	120(17.19%)
⑤ 총학생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28(12.77%)	43(10.75%)	112(16.05%)
⑥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견	284(15.91%)	63(15.75%)	132(18.91%)
⑦ 기타	19(1.06%)	4(1.00%)	3(0.43%)
소계	1,785명	400명	698명

8.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칙 중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에 대한 의견은?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매우 찬성	285(37.35%)	26(14.61%)	47(23.98%)
② 찬성	286(37.48%)	119(66.85%)	112(57.14%)
③ 잘 모름	173(22.67%)	26(14.61%)	16(8.16%)
④ 반대	16(2.10%)	6(3.37%)	18(9.18%)
⑤ 몹시 반대	3(0.39%)	1(0.56%)	3(1.53%)
소계	763명	174명	196명

9.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라는 항목에 대한 의견은?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매우 찬성	360(46.81%)	46(32.39%)	80(40.40%)
② 찬성	258(33.55%)	76(53.52%)	99(50.00%)



인권토론회

③ 잘 모름	121(15.73%)	12(8.45%)	7(3.54%)
④ 반대	22(2.86%)	4(2.82%)	10(5.05%)
⑤ 몹시 반대	8(1.04%)	4(2.82%)	2(1.01%)
소계	769명	142명	198명

10. ‘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않고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항목에 대한 의견은?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매우 찬성	304(39.48%)	40(22.99%)	44(22.34%)
② 찬성	240(31.17%)	101(58.05%)	75(38.07%)
③ 잘 모름	180(23.38%)	16(9.20%)	42(21.32%)
④ 반대	37(4.81%)	16(9.20%)	29(14.72%)
⑤ 몹시 반대	9(1.17%)	1(0.57%)	7(3.55%)
소계	770명	142명	197명

11. ‘학생의 인권침해행위의 금지하는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343(13.57%)	61(14.32%)	94(15.24%)
②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하는 행위	403(15.95%)	75(17.61%)	131(21.23%)
③ 학생의 두발, 복장 등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570(22.56%)	62(14.55%)	82(13.29%)
④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434(17.17%)	67(15.73%)	105(17.02%)
⑤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510(20.18%)	120(28.17%)	166(26.90%)
⑥ 학생에게 교실 외에 화장실, 교무실, 운동장 등을 청소하게 하는 행위	238(9.42%)	38(8.92%)	37(6.00%)
⑦ 기타	29(1.15%)	3(0.70%)	2(0.32%)

12. 학생 대표를 학교 운영위원회에 구성원으로서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찬성	398(52.79%)	72(39.56%)	83(29.54%)
② 참관이면 족함	161(21.35%)	66(36.26%)	141(50.18%)
③ 반대	57(7.56%)	15(8.24%)	34(12.10%)
④ 잘 모름	138(18.30%)	29(15.93%)	23(8.19%)
소계	754명	182명	197명

1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 구축과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찬성	388(51.25%)	81(46.02%)	108(55.38%)
② 참관이면 족함	201(26.55%)	69(39.20%)	65(33.33%)
③ 반대	33(4.36%)	7(3.98%)	10(5.13%)
④ 잘 모름	135(17.83%)	19(10.80%)	12(6.15%)
소계	757명	176명	195명

14. 위와 관련된 법안이 제정이 되면 학교 내 학생자치활동이나 학생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그렇다	428(55.66%)	74(40.88%)	102(54.26%)
② 동의하나 시기상조	190(24.71%)	60(33.15%)	40(21.28%)
③ 법제정 없어도 학교 내에서 해결	25(3.25%)	29(16.02%)	34(18.09%)
④ 절대 제정되어선 안 된다.	8(1.04%)	4(2.21%)	1(0.53%)
⑤ 잘 모르겠다.	118(15.34%)	14(7.73%)	11(5.85%)
소계	769명	181명	188명

=> 학생회 법제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주로 학생 복지 및 학교 생활과 관련된 의견 심의 및 의결, 학칙 중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높은 수치로 선택되었고,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견, 총학생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가 골고루 선택하였다. 교사는 모든 항목을 다 높게 선택했으나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선택하였다.

금지할 조항에서는 모두 비교적 높은 수치로 찬성을 하였으나 교실외의 다른 곳 청소 금지에 대해서는 모두 낮은 수치로 선택을 하였다.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가장 높은 수치로 선택을 하였으나 앞서 인권 인식 조사에서 해당되는 항목에 거의 다 낮은 수치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차별이 어떠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고민해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 중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부분에서는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을 보여 주었으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는 '찬성'에 해당하는 수치가 높았는데(특히 학생은 높은 수치로 매우 찬성), 이 법안이 학생들의 환영을 받고 있고 학생 인권을 신장해 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홍보하는 것이 학생인권 신장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실태조사를 정리하며>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고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신체자유 침해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고 학교 내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수위도 높았다.

그러므로 학생 인권 법안 발의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심을 끌고 학생의 신체 자유와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불러 일으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인권 의식이 낮게 나타났지만 특히, 미래의 일꾼을 길러내는 학교의 교육을 담당한 교사의 인권 의식이 낮은 것은 큰 문제다. 이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 인권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자라나는 학생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에 따라 체감하는 부분이 서로 달라 상호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은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인권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 보호 장치가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 인권 법안으로 학교 내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제도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키워야 할 때이다.

학생들은 본인의 신체 자유를 지키기에도 너무나도 힘겨워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알지도 못하고 주장을 하지도 못한 채 반항을 할 뿐이니 얼마나 애처로운가! 이런 척박한 현실에서 그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는 만무하다.

우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학생에게 잘 할 것을 조건적으로 달기보다는 학생을 어른들과 동등하게 존중하여 성숙한 행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 법안이 우리 사회에 던진 학생회 법제화를 포함한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자!!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구정인

학생의 예배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46일간의 단식

최근 강의석군의 오랜 단식이 요구한 것은 학생의 예배선택권이었다. 거대한 교육제도의 근본적 문제 개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종교의 개혁을 이야기 한 것도 아니다. 그냥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비종교인 학생들에게 예배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고 한 것이 강의석군의 소박한 바램이었다. 강의석군은 이 문제로 목숨을 잃을 뻔 했다. 현재 학교는 예배선택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강의석군은 2차 단식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자기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인 것이다.

학생들이 지켜야할 학생생활규정에 학생의 의견은 없다

예배선택권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학생생활규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의 특징을 ‘첫째, 누가 만든지 아무도 모른다. 둘째, 적용하는 교사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르다 셋째, 황당하다’로 규정한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 규정을 학생들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각적으로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결정된 자기의 생활규율, 단속하는 교사에 따라서 규정을 어긴 학생이 누구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고무줄 같은 생활규정을 누가 지키고 싶겠는가.

학생들의 학습도 억지와 강요로

올 초 물의를 빚었던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강제적 시행문제도 학생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 해왔다. 학생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강제자율보충수업이 오히려 능률적인 학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 학생들에게 일괄 적용하려고 하니 마찰이 생기고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결국 학생들의 삶과 생활 학습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학생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결정된다는데 있다. 당사자들이 자각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를 배제한 채 결정하게 되니 결정한 사람들이 당사자들을 억누르고 강요



해서 시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요되는 지배문화에 억눌려진 학생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반항하거나, 무기력하게 순종하거나, 열심히 쫓아가는 것뿐이다.

학생 자신의 문제는 학생이 스스로 결정해야 책임도 스스로 진다.

학생들의 문제에서 억지로 강제로 시행할 수 있다는 교육방침은 갈수록 학생들 앞에서 무기력해질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해야 책임성 있는 실천이 뒤따를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인 학생에게 물어야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문제는 결국 학생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아무 결정권이 없는 학교생활, 학생을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무기력하게 만든다

자치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생에게 어떤 권한을 주자고 하는 취지 일 뿐 아니라 막히고, 비뚤어져 있는 학교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공교육이 죽은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이 큰 문제라면 학교의 주체인 학생에게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 해서 학교에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무기력하게 만든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력이다. 그것도 특히 학교에서는 가장 심하다 학교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의욕도 없다. 이런 죽어있는 학교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자치활동이다.

학생회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현황 자료와 학생회 임원들의 설문조사, 각 학교의 학생회칙을 분석해봄으로서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며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참고자료>

‘지도’는 없고 ‘자문과 조언’만 있다

- j고등학교의 모범적 학생회칙 -

학생회칙 중 눈에 띠는 학생회칙을 발견했다.

이 학교는 ‘지도위원회’가 없고 대신 학생회 활동에 자문하고 조언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다.



발제 2

이 학생회칙은 목적에 ‘학생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며 ... 슬기롭고 책임감 있는 전인적 인간이 되게 한다’고 명시하며 내용에서도 그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교사들의 자문, 조언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회칙과 구분되어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규정>

- 학생회 목적은 ‘학생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며 ... 슬기롭고 책임감 있는 전인적 인간이 되게 한다’
- 학생회 기능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자율적 자치활동
- 자문과 조언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안에 실무를 위하여 ‘자문지도 소위원회’를 둔다.
- 학생회 전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 『학생총회』
- 예산은 운영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확정
- 예산 결산 보고서는 대의원회에 제출
- 회칙개정 발의되면 ‘학생 회칙 개정 기초 위원회’를 구성 회칙개정안을 작성
- 선거운동은 합동 연설, 방송 연설, 개별연설 모두 가능
-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열람하며 이의제기를 받는다
- 모든 선거운동은 지도위원회의 지도가 아니라 회칙에 의거해서 선관위의 지시를 받는다
- 학생회 정부회장 투표결과는 자문위원회에 통고만 하고 바로 게시판에 공고하면 효력이 발생

- j 고등학교 학생회칙 -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회는 학생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여 건전한 학풍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자율적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슬기롭고 책임감 있는 전인적 인간이 되게 한다.

제 2조(명칭)

본 회는 ‘j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 3조(기능)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자율적 자치활동



인권토론회

- 2) 학업,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3)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족,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활동
- 5)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
-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맞는 여러 활동

제 4조(활동범위)

본 회의 활동은 학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 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는 권리 행사가 중지된다.

제 6조(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 참여할 권리 의무를 지니고,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7조(조직)

본 회는 학생 총회, 대의원 총회, 운영 위원회, 학년회의, 학급회의로 구성된다.

제 8조(자문위원회)

본 회의 자문과 조언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안에 실무를 위하여 ‘자문지도 소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학생 총회

제 9조(학생 총회의 구성과 기능)

본 회는 j고등학교 학생회 전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 정·부 회장 선출
2. 기타 중대한 학생회 활동에 관한 의결

제 10조(학생총회의 의장)

본 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며 궐위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 11조 (소집)

제 10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집한다.



제 12조(공고)

본 회의 개최는 최소 3일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주제를 공고한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 13조(구성과 기능)

본 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과 권한을 지닌다.

1. 학생회칙 제·개정의 발의부 및 제·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2. 임시 학생총회 소집 요구
3. 학생회 사업의 계획, 심의, 승인
4. 학생회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의결
5. 운영위원회 및 학년, 학급 회의에서 부의한 안건의 토의
6. 운영위원회의 임명 동의
7. 건의 사항의 수렴 및 추진
8. 기타 대의원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14조(의장)

본 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며 권위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 15조(소집)

본 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1.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 회의는 다음의 경우 개최한다.
 - (1) 대의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
 - (2) 운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3) 자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4 장 운영 위원회

제 16조(구성과 기능)

본 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차장으로 구성되며 학생 회의 집행 기구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닌다.

1. 학생회 활동에 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및 집행 결과 보고
2. 사업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3. 대의원회 소집 요구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결정

5. 대의원회에서 요구하거나 위임한 사안 처리

제 17조(조직)

본 회는 아래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학생회 사업에 관한 기록 및 추진 재정 관계 업무
2. 학예부 : 학·예술 활동, 교양, 취미 및 학생회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3. 체육부 : 학생회 회원의 심신 단련과 상호 유대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
4. 홍보부 : 학생회 사업의 대내외적 홍보 및 학생 여론 수렴
5. 생활부 : 각종 캠페인 활동 및 행사 진행
6. 환경부 : 환경보전 활동 및 각종 환경 미화 활동
7. 정보부 : 인터넷을 통한 학생회 사업의 대내외적 홍보 및 학생 여론 수렴
8. 동아리 연합부 : 동아리간 이해 조정과 연대 강화 활동

제 18조(운영 위원회 회의)

1. 주1회

2.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자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5 장 학년 회의

제 19조(구성과 기능)

본 회는 각 학년의 정, 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의결 집행 기구로써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 각 학년에만 해당하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2. 각 학년에만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건의
3. 각 학년 안건 중 타 학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건에 대한 의결 및 집행

제 20조(의무 규정)

본 회에서 결의 집행하는 모든 사안은 학생회장 및 해당 학년주임의 자문을 얻어야 하며 그 집행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학급회의



발제 2

제 21조(기능)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 및 기능을 갖는다.

1.학급 정, 부 반장의 선출

2.주 의제에 따른 실천사항 토의

3.학교 및 학생회의, 학년회의에 부의할 안건 결정

4.기타 토의 사항

제 22조(의장과 조직)

의장은 해당학급의 회장이며 겸위시는 부회장이 대행하고 학급의 형편에 따라 제 18조에 상응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23조(회의소집)

본회의는 매주 정기회의와 회원 1/3 이상이 요구할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 7 장 자문위원회

제 24조(구 성)

본 회는 전체 자문 위원회와 자문 지도소위원회를 둔다.

1.전체 자문 위원회 : 전교 직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다.

2.자문 지도소위원회 : 운영 위원회 각부서와 자문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교감이 된다.

제 25조(기 능)

각 자문 위원회는 해당 학생회 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 조언할 수 있다.

제 8 장 임 원

제 26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학생회장, 부회장, 운영 위원회 각부서의 부장, 차장 및 각 학급의 정부 회장으로 한다.

제 27조(임원의 기능)

1.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 3학년 회의의 의장으로서 각 회의를 총괄하며 운영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2.부회장 : 1,2학년에 각각 1인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며 해당 학년 회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인권토론회

3.운영 위원회 부장, 차장 및 부원 : 소속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4.학급 정·부회장 : 소속 학급회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서 해당 회의를 주관하며 학급 회원의 여론을 수렴 전달한다.

제 2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본 회의 각 임원의 선출은 별도의 임원 선출 관리 규정의 해당 항에 따른다.

2.임원의 임기는 당해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한다.

제 9 장 재 정

제 29조

본 회의경비는 학생회비 및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1.학생회비 금액은 자문 위원회 자문과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2.기타 수익금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충당한다.

제 30조(관 리)

학생회비의 수입, 지출업무는 학교의 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의 지출서는 해당 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총무부장 및 학생회장의 결정과 자문 위원회의 동의,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제 31조(예산의 결정 및 심의)

1.예산의 운영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2.예산 편성이 늦어져 학생회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학생회장은 대의원회와 자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년도에 준 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필요시 추가 경정 예산을 둔다.

제 32조(결 산)

운영 위원회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10일 이전에 예산 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0 장 의 결

제 34조(정족수)

각급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되며 가



부동수 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11 장 회칙 개정

제 35조(발의)

본 회칙은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발의를 의결한다.

제 36조(개정 기초 위원회)

회칙 개정이 발의되면 학생회장은 개정 발의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안에 5인에서 10인 이내의 '학생 회칙 개정 기초 위원회'를 조직한다.

제 37조(개정안의 확정)

'학생 회칙 개정 기초 위원회'는 조직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칙개정안을 작성하여 대의원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된다.

제 38조(회칙의 유효 기간)

본 회칙은 회칙 개정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유효하다.

제 12 장 부칙

1. 본 회칙은 확정된 날로부터 3일간의 공고 후 효력이 발생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통례에 준하여 그 해석은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3. 본 회칙은 200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선출 규정

가. 정, 부 회장

1. 본 회의 회장과 2학년 부회장은 전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2.1학년 부회장은 대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2조 (선거 시기)

1. 회장과 2학년 부회장 선거는 임기 전 해의 10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학년 부회장 선거는 임기 당 해의 3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조 (선거권, 피선거권)

1. 정, 부회장 선거권은 전 회원에게, 1학년 부회장은 대의원에게 있다.

2. 피선거권은 전 회원 중 다음의 회원에게 한다.
 - a. 선거일을 기준으로 교내이상의 징계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자
 - b.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c. 유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조 (선거 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

1. 선거일이 확정되는 즉시 회장은 '선관위'를 조직한다.

2. 선관위 위원장은 회장, 선관위 위원은 대의원에서 10명을 선출한다.

3. 선관위원은 어떠한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4. 선관위 위원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정히 주관한다.

5조(선거관리 규정) 정, 부회장 선거관리 규정은 별도로 둔다.

나. 대의원

6조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각 학급의 정, 부회장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7조(선거 시기) 당해 3월, 9월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조 (선거권 피선거권)

1. 선거권은 전 학급회원에게 있다

2. 피선거권은 3조 2항에 준한다.

9조 (보궐선거) 회장이 궐위시에는 새로 선출을 하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한다.

10조 선거의 구체적 방법은 각 학급의 여건에 맞는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다. 운영위원

11조 운영 위원회 각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전교회장이 추천하고 정, 부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12조 (동의의 재 제청)

1.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운영 위원은 1회에 한해 재 제청 받을 수 있다.



발제 2

2.재 제청에 의해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 운영위원에 대해 정. 부회장은 다른 이로 제청하여야 한다.

13조 (자격) 제 3조 2항과 같다.

선거 관리 규정

1조 (공고) 선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일시를 게시판에 공고한다.

2조 (선거인 명부)

1.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 명부로 대치한다.

2.입후보자 등록 마감 일로부터 3일간을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으로 한다.

3.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 2일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그 이의를 재심하여 가부를 '이의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조 (입후보)

1.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유권자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와 담임 교사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추천인은 2인 상 추천 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그 추천인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4조 (등록 취소)

입후보자가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거나 입후보 요건에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선관위 위원장이 지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사유를 밝혀 등록 무효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5조 (후보자 공고)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입후보자 명단을 게시판에 공고한다.

6조 (선거 운동)

1.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명단이 공고된 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2.선거운동에 사용할 모든 홍보물은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선거연설은 합동 연설, 방송 연설, 개별 연설이 있다.

1) 선거연설

① 선거일 3일전에 동일 장소에서 합동연설을 실시한다.



ㄴ. 각 후보자마다 1인의 찬조 연설을 할 수 있다.

ㄷ. 연설순서는 후보자를 간의 추첨으로 정하고 찬조연설은 각 후보자의 연설직전에 한다.

ㄹ. 후보자의 연설은 5~7분, 찬조 연설은 5분의 제한시간을 갖는다.

2) 방송연설

ㄱ. 선거 연설 기간 중 신청 시간 제한하여 5~7분간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ㄴ. 방송연설을 희망하는 후보는 희망일의 3일 이전에 선관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개별연설

ㄱ. 각 후보자는 휴식 시간과 방과 후에 한하여 개별 연설을 할 수 있다.

4.모든 선거운동은 회칙에 의거한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조 (선거 방법)

1.선거는 회원 전체의 단기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2.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다득표자가 2인일 때는 대의원의 재투표로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3.입후보자가 1인 일 때에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4.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자문위의 자문과 학교장의 승인을 얻는다.

8조 (투표)

1.개표는 선관위에서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 시에도 참관인이 된다.

2.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이내에 선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표수, 기권표수 오차를 게시판에 공고한다.

3.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되지 않았거나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혹은 기표를 칙별할 수 없는 것.

3) 공인되지 않은 기호로 표시된 것.

4) 투표용지에 낙서가 된 것.

4.오차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수를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수로 한다.

9조 (당선 공고)

1.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 선관위 위원장은 그 결과를 자문 위원회에 통하고 게시판에 공고한다.



단, 선거과정에서 규정이 어긋난 일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선거를 취소하고 그 사유를 공고한다.

10조 (재선거와 보궐 선거)

1.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1차 선거와 동일하다.

- 1) 당선인이 없을 때
 - 2) 당선이 취소되었을 때
 -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폐선거
 - 4) 오차가 득표자 1,2위의 표차를 초과하였을 때

2. 학생회 정, 부회장 과정에서 잔여임기가 100일 이상인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총무부장을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참고자료2> 대의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 무시되는 상황

것이 무시되는 상황

- 학생회 활동을 의욕적으로 시도했던 어느 학생회장의 답면서

학생임원의 답변서중 눈에 띠는 답변서가 있었다. 답변 내용으로 봐서 학생회장은 학생회칙도 바꿔보려고 대의원 회의에 제출해보고, 운영위 회의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전의사항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루에 한번씩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해 보려고 노력한 듯 하다.

“축제 예산 20만원”

“학생회칙 공개! 학생답게 행동하면 벌 받을 일 없으니까 공개 안 한다는 대답 들을.”

“건의사항을 따로 올리지만, 더디게 받아들여짐. 하루에 한 번씩 찾아뵙고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는지를 검토함”

“대의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 무시되는 상황”

<학생회 권리 관련>

1. 학생회 대표 학운위 참가여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2. 2004년 학생회비 전체 예산액이 열만지 알고 있나요? 축제 때 지원받는 20만원.



3. 2004년 축제 예산은 얼마였나요? 20만원.
 4. 축제예산편성, 사용, 있었나요? 예산안을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음.
 5. 학생회임원이 예산사용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기안을 만들어서 제출.
 6. 학생회비 사용 예산 결산을 공개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나요? 축제 자금 사용 내역서를 올림.
 7. 학교 규정중 학생관련 규정의 재개정시 학생회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학교 규정의 재개정시 수렴은 되지 않고, 학생회 대의원회를 통해 학생회칙을 개정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무시됨.

<학생회실 관련>

1. 학생회실이 있나요? 예.
 2. 학생회 임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 나요?(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예. 열려 있음.
 3. 1학기동안 학생회실을 몇회나 사용했나요? 계속.
 4. 학생회실을 사용하는 용도는? 모임 장소.
 5. 사용횟수가 드물다면 이유는? 사용 많이함.
 6. 학생회실 비치 주요 기기(컴퓨터, 프린터, 인터넷연결, 복사기 등등) 없음.

<학생회임원회의 관련>

1. 학생회 임원은 몇 명이며 임원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학생회장, 부회장, 종교, 총무, 서기, 회계, 문예, 봉사, 예의, 훈련, 환경, 체육, 홍보, 장학, 통신, 음악, 문화부장, 차장 각 1명씩 총 32명. 부장은 3학년, 차장은 2학년.
 2. 학생회 임원 선출방법(교사임명, 학생회장 임명)은? 학생회장, 부회장은 직선제, 임원들은 선배들이 선출.
 3. 2004년 현재까지 임원회의를 몇회나 했나요? 한 달에 1번 원칙을 지키고 있음.
 4. 주요 안건은 무엇이었나요? 급식, 학생회칙 개정, 스승의날 행사 등등.
 5. 담당교사가 참가하나요? 회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모두(전교직원, 전교생)에게 공지를 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청 가능. 담당교사의 경우 선생님이 오고 싶으실 때만 참여하심.

<학급회의 관리>

1. 학급회의를 시간(시간표상) 은 월 몇회인가요? 1주일에 한 시간.



발제 2

2. 학급회의를 대체수업(보충, 자율학습)으로 하고 있나요? 그 유형은? 반반이다.
3. 학급회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임원선출, 청소계획, 소풍 장소 결정, 자리 정하기 등등.
4. 학급회의에 대한 개선요구사항? 활성화.

<대의원회의 관련>

1. 2004년 대의원회의 개최 횟수. 한 달에 한 번씩.
2. 04년 1학기 대의원회의 안건은 무엇이었으며 결정사항은 무엇이었나요? 1년 계획 발표.
3. 대의원회의 참가 교사는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학생회 담당 교사. 1인.
4. 회의에서 건의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처리 결과는 공개됩니까? 공개방법은 무엇입니까? 화장실 위생, 교실문 교체 등등. 건의사항을 따로 올리지만, 더디게 받아들여짐. 하루에 한 번씩 찾아뵙고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졌는지를 검토함.

<학생회장 선출방법관련>

1. 학생회장 선거는 직선인가요? 간선인가요? 직선.
2. 학생회 부서는 무엇무엇이고 각 부서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에 있다.
3. 학생회장 후보에 자격제한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前학기 평점이 4.0이상, 교회 출석(이제 없어짐.), 품행이 방정하고, 징계(교내 봉사 이상)받은 일이 없는자.

<회칙 및 학칙>

1.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은 학생들에게 공개되나요? 안 됨.
2. 공개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서 여쭤봐도 학생답게 행동하면 별 받을 일 없으니까 공개 안 한다는 대답 들음.
3.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대의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 무시되는 상황.
4. 생활규정을 개정하는데 학생들의 의견개진권이 있나요? 없다.

[참고자료1] 유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가. 구성 : 전문, 3부, 54개조로 구성(붙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참조)

나. 채택 및 발효 경위

- 1924.09.26 : 국제연맹총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채택
- 1959.11.20 : 유엔총회결의로 제네바 선언을 기초로 한 아동권리선언 채택
- 1976.12.21 : 유엔에서 1979년을 세계아동의 해로 지정
- 1978.12.20 : 유엔총회에서 인권위원회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초안작성 요청
- 1989.11.20 : 유엔총회 합의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
- 1990.09.0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
- 1990.09.25 : 우리나라 서명
- 1991.12.20 : 협약 제49조제2항에 의거 비준서 기탁(유엔사무총장)
 - 협약 내용중 가족법 등 우리나라 현행 관계법령과 저촉되는 일부조항들에 대하여 유보하는 방식으로 비준
 - 우리나라가 비준 유보한 3개 조항(국내법과 모순)
 - 협약 제9조제3항의 ‘자녀의 부모 면접권 보장’ : 우리 민법은 부모의 면접권만 보장(제837조제2항)
 - 협약 제21조 가항의 ‘입양의 절차’로서 협약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나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민법 제869조, 제878조, 호적법 제66조)
 - 협약 제40조제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제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헌법 제110조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다. 협약의 취지 및 주요 내용

- 취지 :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주며 이러한 아동의 인격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 및 가정 모두가 특별한 배려를 제공함

○ 4개의 기본원칙

-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최선의 이익원칙(제3조)
-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원칙(제6조), 아동참여의 원칙(제12조)



○ 협약의 주요 내용

-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로 개발되도록 지지하고 있음.
- 시민적 권리의 보호 :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존권, 의사표시권 등
-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 가족과의 동거권, 양육을 받을 권리, 입양제도, 건강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 교육관련 권리, 결손가정과 장애 아동의 보호, 문화 활동 참여권
- 기타 권리의 보호 : 학대, 유기, 착취, 인신매매, 무력, 분쟁,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

○ 협약 당사국의 의무

- 협약상 권리실현 조치
- 협약에 규정된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경우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내에서 조치를 취할 의무
- 정기보고서 제출 : 협약 내용과 관련된 국내조치상황에 관하여 발효 후 2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매5년마다 보고서 제출

라. 우리나라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현황

○ 현재 2차 보고서까지 심의를 받았음.

- 제1차 보고서 : '94.11 제출하여 '96년 심의받음.
 - 제2차 보고서 : '00.05 제출하여 '03. 1.15일 심의받음
-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스위스 제네바)는 '03.01.31 우리가 제출한 제2차 보고서를 검토하고,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노력에 관한 관찰-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권고의견(Concluding Observations)을 채택-발표(붙임 "권고의견" 참조)
- 제3차 보고서는 아동권리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3차와 4차 보고서를 통합하여 4차 보고서 제출시한인 2008년 12월 19일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요 권고의견

- 여자어린이, 장애어린이, 혼외출생어린이에 대한 차별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캠페인 개발



-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어린이의 참여 증진
- 학교, 교육제도 내 징계절차에서 어린이의 견해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등 필요조치 시행
- 부모, 교육자, 공무원 등 대상으로 어린이의 견해와 참여 존중 권리에 대한 교육적인 정보 제공
- 어린이들이 학교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학교운영규칙을 개정
- 한국정부의 어린이 관련 예산은 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낮은 수준
- 기존 통계수집체계가 18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통계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함
- 어린이, 일반대중, 어린이관련 전문가(교사 등)가 협약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잘 알고 있지 못함
- 관련 법령과 학교운영규칙을 개정, 가정-학교 등에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
- 체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 어린이의 ill-treatment가 가져오는 해악에 관한 공공교육캠페인 실시
- 경쟁이 심한 교육제도가 어린이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것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 경쟁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협약 29조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교육정책에 반영
- 아동권리협약 29조1항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발전
-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내용 중 학교생활규정과 관련된 부분

- ▶ 학생의 표현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 ▶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 ▶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발제 2

-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 ▶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정책을 재고할 것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후속조치

이후 교육부는 '인권존중·자율·책임 풍토 조성을 통한 생활지도 계획'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으며 학교생활규정을 점검,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2003년 4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참고자료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학교생활규정(안) 전반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유엔 아동 권리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인권토론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 4.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
-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 5.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
- 6. 예시안의 '목적'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것과 달리 전반적 내용은 학생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교사 및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안에서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며 학습자의 능



발제 2

- 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9. 각급 학교 및 도·농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함. 특히, 초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인권토론회

학생 용의복장 지도의 교육적 의미

여운모 / 경인중학교

『관습, 예절, 법, 도덕』 이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집필, 발간한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첫 단원이다. 이를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의 첫 단원으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육의 기본 관점과 합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

일반적으로 인간교육의 목표, 특히 인간(-개인의 삶과 사회적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도덕-인성 교육의 핵심은, 『관습과 법』의 한계를 넘어 『예절과 도덕』을 통한 조화로운 삶을 사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예절과 도덕을 통한 조화로운 인간살이 실현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인류의 문화가 찾은 최고의 교육적 가치요 이상이라는 전제가 우리 교육의 기본 합의요 출발점이라는 말이다.

『관습과 법』은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근거로 매우 중요한 현실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것들이 갖는 외면적 형식성(둘 다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강제성(관습집단의 집단따돌림이나 법적 처벌이 따른다), 몰개인성(沒個人性-개인 사정과 배경, 처지를 일일이 배려하면 법과 관습의 형평과 보편을 유지하기 어렵다.)으로 인하여 변화와 성장을 전제로 한 교육의 핵심주제-방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절과 도덕』 교육의 핵심 주제이자 방법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예절은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 극기복례(克己復禮)하는 -즉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 겸손하고 양보하는 지극히 세련된 인간됨의 표현이요, 또한 도덕은 느낌-감정-생각-판단-성찰-깨달음의 과정을 통하여 전인격적 완성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긴, 또한 섬세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교육이라는 일이 진정 교육이 되려면 간편하고 쉽게만 되지 않는다. 교육의 이름으로 실천된 수많은 시도가 반교육(反教育)이 되기 십상인 이유이다. 항용 실패한 교육은 교사나 학부모가 교육의 근본 의미와 목표를 잘못 잡은 결과 애초에 설정한 성공이 삶과 현실에 벗어나게 되고, 그런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그 책임을 그들의 교육대상(실제로는 제대로 교육은 그들이 대상으로 보는 그들의 자녀와 학생이 주체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인 학생과 자녀에게 떠넘기게



토론 1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학생과 자녀에게 화를 내는 모양이 된다.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화나는 마음을 학생과 자녀 앞에서 요행으로 감춘다 해도 속마음은 성급해지기 마련이다. 성급하게 되어 참을성이 줄면 줄수록 간편한 길만 찾게 되고, 이렇게 쉬운 길만 찾게 되는 교육은 그 소박 순수한 출발과는 달리 알맹이(사람-학생)는 달아나고 껍데기(성적-규칙)만 붙잡게 된다.

학생(사람)이라는 알맹이를 놓치지 않고 교육이 교육다워 지기 위해, 이 시대 우리 교사와 학부모에게 필요한 자세는, 성급하고 선부른 개입 간섭이 아니라 기다리고 지켜보아 주는 일이 아닐까.

어른들 스스로의 불안에 쫓기어 둥둥이를 들고 아이들을 이리저리 끌고 몰아대는 모습이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 눈이 놓치지 않을 만큼 멀찌감치 앞에서거나 혹은 아이들이 돌아보고 절망하지 않을 만큼 맨 뒤를 지키면서 아이들 스스로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학생 사랑이 아닌가 말이다.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면서 어떻게 언제나 말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감동만 있겠는가.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이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한 우리 어른들의 가슴 졸임과 손발이 다 닳음을 넘어선 피 말림의 끝이, 아이들의 환한 웃음으로 끝나는 감동의 드라마가 될 수 없다면 아니 그 감동의 드라마이기를 포기한다면, 그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쏟는 우리 어른들의 거의 올인(ALL-IN)을 방불케 하는 노력은, 실패한 인생들이 아이를 앞세워 벌이는 추악한 탐욕의 재도전 이외에 무엇이며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꿈을 잃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다.

교육의 성과는 단순히 교사-학부모의 성공한 작업이 아니라 오롯이 학생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생각해보자. 사육의 성과는 닦과 돼지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양반이 갖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의 참 주인은 학생이다. 교사와 학부모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 때 돋는다는 말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도움을 거두어야 한다. 도움 받는 이가 싫다는데도 돋는 사람이 강제로 돋겠다 나선다면 도움이 아니라 간섭-협박이다.

학생생활 지도에서 용의복장 지도라 함은 용의복장을 통하여 학생이 자신의 품위와 개성을 세련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을 것이다.



간섭과 협박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간섭과 협박의 눈앞에서 만이다.

간섭과 협박은 교육 마약이다. 효과는 빠르나 그 것 없이는 효과가 지속되지 않으며 다른 약을 쓸 수 없게 만든다.

이쯤 되니,

『좋은 얘기요, 그리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신 차리고 발을 땅에서 떼지 맙시다. 교육은 꿈만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과 제도란 말이요.』라는 말이 들려온다. 그럼 숭고한 교육이니 뭐니 빼고 더 단순하고 쉽게 가자. 무엇으로 『도덕』이냐 『법』이냐를 나눌까?

그 기준, 중학교 1학년 도덕 1학기 첫 시험 단골 문제이다.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 처벌이 있는가, 없는가?

피해를 염려하여 강제적 처벌이 필요한 것 - 『법』, 행위자 인격의 판단 근거가 될 뿐 행위자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 - 『도덕』.

학생이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는가? 어떤 머리모양부터 어떤 양말 신발을 그리고 어떤 머리핀부터 어떤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가? 가 다른 학생 혹은 선생님 학부모들에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해를 미치는지 생각할 일이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용의복장의 문제는 강제력을 갖는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백 번 양보하여 규정에도 처벌의 강제기능만이 아니라, 교육적 고민이 담긴 권장 기능이 있지 않겠나 라는 말을 받아 안다 하여도, 그렇다면 왜 용의복장 규정이 권장-혜택의 모습이 아닌지 묻고싶다.

이리 저리 따져보아도 현행 용의복장규정은 학생의 인권침해요, 용의복장을 통한 진정한 교육적 생활지도의 포기로 보인다.

공자(孔子)와 성녀(聖女)는 규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선부른 규정으로 도덕을 세우려 할 때 멀쩡한 세상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잘못된 법은 사람 잡는다.

만일 어떤 집단 가운데 일방이 도덕을 규정(법)으로 만들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낀다면, 이제 공감과 협력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토론 1

없다는 좌절의 표현이며, 이는 곧 대화와 설득 그리고 모범과 감화라는 교육적 방법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그 결과는 두 가지로 예상된다. 그 법조항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이 법을 무시하는 결과로 진행되어 함께 실시되는 다른 정당한 법까지 무시하게 되는 아노미(ANOMIE-무규범의 상황) 상태를 부르든지,

혹은 법을 앞세워 누르는 힘이나 막는 힘이 두려워 그 앞에서는 복종하나 눈 밖에 벗어나기만 하면 다른 짓을 일삼는 앞뒤와 겉과 속이 다른 도덕적 이중성(偽善)의 개인적 행태 혹은 사회적 분위기라는 또 다른 불건전을 부른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용의복장을 규칙화 하는 데는 그 속에 두 가지 규제기제(명예와 통제)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교복(학교규정에 의한 복장)이 명예이던 시절이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시절은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것만으로 더 할 나위 없는 명예였을 터이고, 차차 더 많은 학생들로 늘어나게 되자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지위표시가 되는 성적이 상위권인 명문교의 교복만 명예가 되고, 심지어는 하위권-하류교에 다니는 학생은 자기 몸 위에 덧씌워진 부끄러운 꼬리표로 교복을 저주하기까지 했다.(아마 졸업식후 교복을 찢는 행위는 수치나 굴욕감에서 벗어나려는 표현으로 통칭 하류교(뚱통학교)라 부르는 그런 학교에서 등장했을 것이다.)

어찌하였든 교복이 정해져 옷을 규칙으로 통일하는 일은 유니-폼(UNI-FORM)을 통한 집단성(그것이 적극적 의미의 명예이든 소극적 의미의 통제이든-사실 배타적 엘리트 의식과 패배적 막가의식은 과도한 성취가 좌절의 보상인 것과 마찬가지이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나, 의무교육 수준의 취학률, 학교 간의 수평 평준화, 패션감각(복장을 통한 자기표현 욕구)의 진보 향상 등의 사회 변화로 현재 중학교 학생들에겐 교복의 의미가 명예에서 통제로 급속하게 곤두박질 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복을 통하여 학생들의 품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학생들의 품행이 복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 맞다 쳐도, 복장으로만 한 학생의 품행을 바로 잡을 수는 없으며 가장 유력하고 좋은



인권토론회

방법 또한 아니다. 오히려 학생의 품행을 변화시키는데 더욱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길의 맨 마지막이 용의복장 지도요, 그것이 교육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방안과 실천이 앞서야 한다. 학생이 교사와 부모를 속마음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과 부모가 하는 옷차림-몸가짐에 대한 충고는 잔소리(요즈음 아이들 표현으로 짱나!에 윤나!)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라. 이는 본 말의 전도이며 과도한 형식화이다.

이런 현상은 반교육의 일반적 문법이요 구조이다.

이를테면,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 오랜 학습시간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모든 학생을 보다 더 오랜 시간 잡아두고 공부시킨다 하여 그 학습에 이해도, 집중도, 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과 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가 달라지기 바라는 일은 사람이 바뀌는 일 아닌가. 사람이 바뀌어야 겠 모습도 바뀐다.

결국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단정한 복장이라는 걸껍데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복장으로 감싼 속 사람 역시 단정한 사람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바뀌어야 할 사람으로서 당사자인 학생의 이해-동의-합의-공감이라는 내면적 변화 없이, 규정이라는 강제에 의해 걸껍데기를 바꾼다면 – 이는 실제로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복장의 변화에 이르는 진정한 의미의 생활지도 교육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양이라는 점이다.

제대로 된 용의복장 지도를 통한 학생 생활 지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용의복장지도가 맨 먼저 앞서가는 단속과 처벌이라는 간편한 방법보다, 용의복장지도를 마지막에 덧대는, -더 힘들고 긴 교육적대화- 이를 통해 학생이 감동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삶과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뀌고, 가슴속에서 우리나라 스스로 태도와 자세를 수정하고, 그 결과로 손과 발 그리고 몸짓과 복장이 바뀌는 감동적인 전인격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 더 이상 학부모나 교사의 말로 안되니 학교규정으로 넣어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좌절에서 생각이나 하겠는가.

용의복장규정이 최소한의 교육적 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 교사 전체의 진지한 토론과 교육적인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학생들을 빼놓은 채, 몇몇 소신을 앞세운 개인(교사와 학부모)들을 대표한다 하나 그들 역시 교사들 사이에서 혹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개적



토론 1

이고 적절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들이 그들만의 머릿속에 있는 단정한 복장 기준으로 볼 때 학생들의 다양한 복장이 눈에 거슬리기 때문이라면 턱없다 할 일이 있다. 이는 보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불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모양이다. 더구나 이 상황에서 보는 사람이 사회적 강자인 교사나 학부모가 되고 보이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인 학생이 될 때 교사 학부모의 일방적인 복장기준은 학생의 사람다운 권리를 억압하는 가장 편리하고 쉬운 빌미로 되고 가장 근본적인 인권유린의 기초로 작용한다.

게다가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일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더욱 뿌리깊게 하는 결과가 되어 사고의 변화-확장으로서의 교육적 사고를 막는 결과가 된다. 또한 반성이나 비판이 존중되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통념이라는 틀 역시 사람들의 다양한 표현과 창의성을 봉쇄하게 되어 반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복제도 및 용의복장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핵심 본질에서 벗어나 부차적인 이유를 들어 약간 뒤로 물러서는 듯한 주장으로, 매스컴이 상품의 과도한 소비를 부축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소비요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오히려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더 솔직하다.) 간편복 혹은 생활복으로서 교복의 규정이 절실하다 말한다. 이 역시 급한 사정을 보아 단기적 교육적 의미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청소년기를 넘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열린 조건에서 스스로 소비욕을 이겨내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익히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라 하겠다.

가난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되면 교육이 살 수 없다(인생의 성취 기준이 경제적 성취라는 도구 가치로 귀결되면 전선미성의 본원적 가치추구라는 인성교육은 죽는다.) 단체 지정복인 교복 속에 자신의 부끄러운 가난(따지고 보면, 자신의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을 숨기는데 성공한 사람은 6년이 지난 후 더 이상 자신의 가난을 숨길 수 없게 될 때 파산에 이르는 카드빚이나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수를 넘는 소비에 매달리는 안타까운 모습일 것이다.

또 논의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걱정하시는 분을 위해 단도직입 간단히 말하자. 초등학교 학생들은 왜 교복을 입히지 않을까? 지난 시기에는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까지 교복을 입었으나 왜 유독 공립 초등학교만 교복을 채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권토론회

학교에 나오는 국민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정해진 복장을 준비해 오라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었으리라. 침략전쟁을 수행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귀족의 권리로서의 전쟁 참여가 아니라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소집에 응한 시민에게 군복과 식량 무기를 스스로의 비용으로 갖추어 군대생활을 하라는 말이 말이나 되느냐 말이다.

그리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학습 준비물까지 학교예산에 반영하여 학교에서 지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중학교 교과서도 교육예산에서 구입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예산에 의한 무상급식이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당장 교복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교육예산으로 책임지고 구입해 공급해야 할 것이다.

학습의 권리가 의무로 되고, 명예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으로 거꾸로 서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살았던 기준과 잣대를 내세워 함부로 아이들의 미래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새싹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선부른 욕심을 드러내면 새싹은 죽거나 굽어버린다. 참고 기다리자 새싹은 우리보다 잘 크리라는 믿음으로 우리 부모,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랬듯이....

그래도 우리들의 과도한 기대가, 우리 학생들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자꾸 부추긴다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관대하게 용서했는가 잊지 말자.

우리가 아이들을 몰아붙이듯 우리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지적하고 따졌다며 -배우는 사람에게 용납되는 실수와 실패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법이니까, 우리 가운데 교단에 계속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전문성은 사태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는데 있지 않을까. 학부모가 혼들린다고 우리가 혼들릴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우리의 전문가적 내공이 학생들의 순박함에서 나오는 관용을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하다면, 다시 부끄럽더라도 말한다. 아이들에게 용서받은 만큼이라도 갚자. 그 길만이 우리를 덜 욕되게 할 것이므로.

경인중학교 학생 생활 안내



새봄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긴 겨울잠을 자던 풀과 나무가 새싹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새와 짐승도 그 춥고 힘들어 아팠던 기억을 묶은 겨울털과 함께 벗어 털어냅니다. 온통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이 새 삶의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을 만나 또다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수업을 하게 될 가슴 벅찬 설렘이 저에게 이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경험을 통하여 보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단 몇 일, 몇 주, 몇 달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선생과 학생이 서로를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로 가르치고 - 배우는 관계에 들어서기도 전에, 마치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 서로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서로를 피하며 끝내 원망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토록 '소중한 설렘-싱싱한 만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망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는 우리 선생들은 학생들과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찾아와 여러분의 서러움과 기쁨, 안타까움과 설렘, 힘겨움과 신바람을 이야기 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사로서의 삶의 실현이요 보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언제나 그런 선생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학생들에게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선생들이 우리 경인 중학교 선생들이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나 대통령이 위협해도 끄덕 않을 그 홀륭한 선생마저도 끝내 못 견디고 희망을 접어버리는 경우는 딱 한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께 배우기를 포기한 듯이 - 선생 앞에서 자기를 낫추지 않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낫추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생활에서 자기를 낫추어 선생님께 배움을 구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소쇄옹대" 4자로 표현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소쇄옹대(掃灑應待)란 말이 있습니다. '소쇄'라는 것은 먼지를 쓸고 물을 뿌림을 뜻하고 '옹대'라 함은 맞이하여 대접함을 뜻합니다. 합쳐 오늘의 뜻으로 풀면 '자기 몸과 자기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돈하고, 사람 즉 친구 이웃 또는 남을 맞고 대하는' 도리-방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이 경인중학교 생활에서 자기를 낫추어 선생님께 배움을 구하는 생활 모습을 크게 소쇄와 응대 두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모든 것은 20여년 동안 학교에서 만난 다른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저에게 깨우쳐주신 것입니다.)

소쇄9조

1.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며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2. 손톱 발톱을 적당하게 깎고 수염 머리를 알맞게 잘라 단정한 모습을 갖춥니다.
3. 교복을 깨끗이 세탁하고 바르게 고쳐 입어 검소한 학교 기풍을 기른다.
4.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알맞게 사용함으로써 실내 청결을 유지한다.
5. 자기가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는 물론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교구 비품 교실 복도 운동장을 훼손하지 않으며 깨끗이 유지 정돈하며 청소에 앞장선다.
6. 청소년 건강에 유익한 위생적이고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점심시간) 정해진 장소(점심시간엔 교실, 쉬는 시간엔 다른 사람이 자기 음식 먹는 모습이나 냄새로 방해받지 않은 적합한 장소/화단주변)에서 먹는다.
7. 술, 담배 마약 등 사회적으로 청소년에게 허락되지 않은 기호품을 금한다.
8. 사치하거나 학생의 품위를 해칠 돈 귀중품 장신구 놀이기구 생활용품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

옹대9조

1.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면 밝고 공손하게 먼저 인사한다.
2. 실내에서 이동할 때에 선생님이나 친구와 마주치면 옆으로 비켜서 먼저 양보하고, 같은 방향일 경우 선생님 뒤에서 이동한다. 피치 못할 급한 경우는 선생님께 말씀드려 허락을 얻어 일을 본다.
3. 문을 통과 할 때, 문을 열어 선생님이 먼저 통행한 후 뒤따라 문을 통한 후 조용히 닫는다.



토론 1

4. 수업시간 시작하는 종이 울리면 선생님이 교실에 도착하기 틀에 먼저 수업준비물과 함께 자리에서 기다린다.
5.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입과 손을 조용히 하여 눈과 귀를 집중하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적극 학습활동에 참여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은 경우 선생님의 허락을 얻어 한사람씩 말한다.
6. 끝나는 종이 울리면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고 교실 문을 닫고 복도로 완전히 교실을 벗어나신 뒤 자기 물건을 챙기고 자리에서 움직인다.
7. 선생님과 선배에게 존댓말로 말하며, 바르고 고운 말씨를 쓰고 거칠고 험한 말씨를 삼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킨다.
8.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힘이나 음란한 행위)
9. 알맞은 목소리로 말하고 알맞은 속도와 힘으로 움직여 다른 사람(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소쇄옹대 18조’를 지킬 때 우리 경인중학교 학생과 선생이 제대로 만나 서로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일거구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과 선생이 우선 서로에게 괴로움, 불안,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 서로가 등을 돌려서는,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학생과 선생이 올바로 만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팍박받고, 고통 받고, 멀시 받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다시 용기와 희망이 될 때, 그를 위한 일에 학생과 선생님이 더불어 도움이 되는 삶을 함께 살 동지가 될 때 우리가 만난 이유는 완성되는 것이겠지요.

이를 위한 첫걸음이자 마지막 모습이 소쇄옹대 18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결국 ‘소쇄옹대 18조’는 학생과 선생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18가지 약속 모두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소쇄옹대 18조” 가운데 사랑을 뺀다면 18조는 구속이요 억압일 뿐입니다.

2003. 03 초 경인중학교 학생부장 여운모가 전합니다.



용의복장 규정 설문 결과 분석

다음은 경인중학교 용의복장 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은 설문에 찬성한 명수와 비율을 나타내며, 학생/학부모/교사 순입니다.

* 학생 : 1,424명	응답자: 1306명	* 학부모: 108명	응답자: 92명
* 교사 : 69명	응답자: 50명		

I. 복장

1. 교복 규정을 없애고 자유복을 입는데 찬성하십니까?

- ① 교복 폐지 379명(29%) / 3명(3.3%) / 13명(26%)
- ② 교복 유지 927명(71%) / 89명(96.7%) / 37명(74%)

1-1. 교복 안에 입는 남방 색깔이 현재 흰색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남방 색깔을 자유롭게 허용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845(64.7%) / 22(24%) / 17(34%)
- ② 제한 필요 326(25%) / 40(43.5%) / 33(66%)

1-1-1. 1-1 질문에 ②라고 선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교복 안에 입는 남방 색깔의 허용기준을 어디까지로 할까요?

- ① 원색을 제외한 대부분 허용 152(46.6%) / 22(55%) / 10(30.3%)
- ② 지금처럼 흰색만 허용 174(53.4%) / 18(45%) / 19(57.6%)

1-2. ‘동절기(겨울)에는 흰색, 회색, 검정 폴라티를 입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폴라티의 색깔을 자유롭게 허용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912(69.8%) / 36(39.1%) / 20(40%)
- ② 제한 필요 392(30%) / 57(62%) / 30(60%)

1-2-1. 1-2 질문에 ②라고 선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동절기(겨울) 폴라티 색깔의 허용기준을 어디까지로 할까요?

- ① 원색을 제외한 대부분 허용 125(31.9%) / 12(21.1%) / 7(23.3%)
- ② 지금처럼 흰색, 회색, 검정색만 허용 255(65.1%) / 45(79%) / 23(76.7%)

1-3. ‘치마길이를 짧게, 폭을 좁게, 교복 본래 주름 외 주름잡기 등 지나친 변형을 하지 못한다’로 교복 변형이 금지되어 있는데, 치마 길이와 폭, 주름모양을 개



토론 1

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허용할까요? 아니면 제한이 필요한가요?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754(57.7%) / 10(10.9%) / 13(26%)
- ② 제한 필요 555(42.5%) / 81(88%) / 35(70%)

1-3-1. 1-3질문에 ②라고 선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치마길이, 폭, 주름잡기 등 지나친 변형에 제한을 둔다면 기준을 어디까지 할까요?

- ① 무릎 위 10Cm 이내 허용 262(47.2%) / 18(22.2%) / 3(8.6%)
- ② 지금처럼 무릎이 보이지 않게 293(52.8%) / 63(77.8%) / 32(91.4%)

1-4. '(여학생) 동복 착용 시 학생용 검정 스타킹을 신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킹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자유로 할까요, 아니면 제한이 필요할까요?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936(71.7%) / 34(37%) / 22(44%)
- ② 제한 필요 318(24.3%) / 59(64.1%) / 20(40%)

1-4-1. 1-4 질문에 ②라고 선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여학생) 동복 착용 시 살색스타킹까지도 허용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① 살색 스타킹까지 추가 허용 162(50.9%) / 28(47.5%) / 17(85.3%)
- ② 지금처럼 검정색 스타킹만 허용 153(48.1%) / 28(47.5%) / 3(15%)

1-5. 겨울철에 여학생은 치마 대신 검정이나 감청색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규정의 색깔과 재질을 자유롭게 허용할까요, 아니면 제한이 필요한가요?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876(67.1%) / 35(38%) / 11(22%)
- ② 제한 필요 395(30.2%) / 61(66.3%) / 28(56%)

1-5-1. 1-5 질문에 ②라고 선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겨울철에 여학생은 치마 대신 검정이나 감청색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규정의 색깔과 재질에서 어디까지 제한이 필요한가요?

- ① 원색과 스판을 제외한 대부분 허용 153(38.7%) / 17(27.8%) / 12(42.9%)
- ② 현재대로 검정과 감청에 남학생과 같은 재질로 제한 265(67%) / 44(78.4%) / 16(61.5%)

1-6. 명찰이 현재 교복에 박음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찰 규정을 폐지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할까요, 명찰 달기를 지금처럼 의무로 할까요?(학교에서는 학년에 따라 바탕색과 글자색만 알림)



인권토론회

- ① 규정폐지, 원하는 사람만 달기 636(48.7%) / 28(30.4%) / 11(22%)
- ② 지금처럼 의무로 규정 664(50.8%) / 64(69.6%) / 29(58%)

1-6-1. 1-6 질문에 ②라고 선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 답한 경우, 규정제한을 어디까지 할까요?

- ① 편 명찰로 달았다 떼었다 하자 364(54.9%) / 19(29.7%) / 6(20.7%)
- ② 현재대로 교복에 박음질하자 300(45.2%) / 44(68.8%) / 23(79.3%)

II. 두발

* 다음 □ 안의 내용은 현재 경인중학교 용의복장 규정 중 '머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단발머리나 학생용 커트를 하되, 긴 머리는 묶는다. (여학생)
2. 염색 및 파마, 무스는 허용하지 않는다.
3.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4. 앞머리는 귀를 가리지 않으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다.(남학생)

2. 남녀 모두 머리 길이 및 묶기 규정을 폐지하고 길이와 묶을 것인지 아닌지를 자유롭게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1120(85.8%) / 36(39.1%) / 19(38%)
- ② 지금처럼 제한 필요 197(15.1%) / 59(64.1%) / 19(38%)

3. 염색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675(51.7%) / 9(9.8%) / 7(14%)
- ② 제한 필요 649(49.5%) / 84(91.3%) / 42(84%)

3-1. 3 질문에 ②라고 선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제한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한다면, 그제한은 어디까지로 할까요?

- ① 원색이나 평크 염색을 제외 허용 126(19.4%) / 11(13.1%) / 7(16.7%)
- ② 검정, 갈색에 한해 허용 403(62.1%) / 40(47.6%) / 19(45.2%)
- ③ 지금처럼 제한 필요 120(18.5%) / 31(37%) / 12(28.6%)

4. 무스(헤어젤)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토론 1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766(58.7%) / 23(25%) / 23(46%)
 ② 지금처럼 제한 필요 526(40.3%) / 69(75%) / 27(54%)

5. 파마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745(57%) / 11(12%) / 11(22%)
 ② 제한 필요 483(37%) / 81(88%) / 39(78%)

5-1. ☐5 질문에 ②라고 선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제한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한다면, 그제한은 어디까지로 할까요?

- ① 스트레이트파마 까지는 허용 272(56.3%) / 47(58%) / 23(59%)
 ② 지금처럼 제한 필요 211(43.7%) / 34(42%) / 16(41%)

III. 장신구(악세서리), 신발, 가방

6. 장신구를 허용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848(64.9%) / 21(22.9%) / 21(22.9%)
 ② 제한 필요 455(34.8%) / 70(76.1%) / 38(76%)

6-1. 장신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경우 허용해야할 것에 0표 하시오 그리고, 예에 없는 것은 ⑥번 그 밖에 ()에 써 주시오.

- ① 귀걸이 (813 / 41 / 19) ② 팔찌 (564 / 18 / 14) ③ 피어싱 (372 / 2 / 4)
 ④ 목걸이 (744 / 33 / 33) ⑤ 반지 (616 / 53 / 40)
 ⑥ 그 밖에 ()

6-2. 장신구를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할 경우 금지해야 할 것에 X표 하시오. 그리고, 예에 없는 것은 ⑥번 그 밖에 ()에 써 주시오.

- ① 귀걸이 (265 / 29 / 13) ② 팔찌 (336 / 51 / 18) ③ 피어싱 (675 / 70 / 38)
 ④ 목걸이 (241 / 26 / 5) ⑤ 반지 (275 / 12 / 9)
 ⑥ 그 밖에 ()

6-3. 장신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경우 제한해야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① 귀걸이 :
 ② 팔찌 :
 ③ 피어싱 :



인권토론회

- ④ 목걸이 :
 ⑤ 반지 :
 ⑥ 그 밖에()

7. 실내화규정을 폐지하고 실외화와 구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833(63.8%) / 38(41.8%) / 16(32%)
 ② 지금처럼 제한 필요 485(37.1%) / 54(58.7%) / 33(66%)

♣ 다음 □안의 내용은 현재 경인중학교 용의복장 규정 중 '가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어깨에 메는 가방으로 원색을 피하며 양어깨에 단정하게 맨다.
 2. 가방없이 보조가방(여행용 가방 및 성인용 가방)만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8. 위의 '가방' 규정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개인의 취향대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① 규정폐지, 자유롭게 허용 1085(83.1%) / 47(51.1%) / 30(60%)
 ② 제한 필요 212(16.2%) / 45(48.9%) / 19(38%)

8-1. ☐8 질문에 ②라고 선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가방 규정을 둘 경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수 고 학 생 습 니다.



학생 용의복장 규정 (△5.12.12개정)

제1조(목적) 학교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용의 복장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성을 도우며, 학생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스스로 지켜내는 준법 정신을 함양한다.

제2조(지도방침)

1. 학기 초 용의 복장 지도 규정을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인지시킨다.
2. 모든 교사가 교내·외에서 용의복장 지도를 실시한다.
3. 교문지도는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회가 차치적으로 실시한다.

제3조 용의복장 지도내용

복장	※ 지정된 모양, 색상의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1. 치마 길이는 무릎 선으로 한다.(여학생)
	2. 춘추복은 동복에서 상의를 벗고 블라우스 또는 남방(여학생), 와이셔츠 또는 남방(남학생)을 입는다.
	3. 교복 안에 입는 남방은 원색을 제외한 교복과 어울리는 색깔을 입는다.
	4. 동복 착용 시 와이셔츠 대신 원색을 제외한 폴라티를 입을 수 있다.
	5. 하복은 지정된 교복을 단정히 반드시 입는다.
	6. 여학생은 동복 착용 시 학생용 검정색 또는 연주황(복숭아색-연한오렌지) 스타킹을 신는다.(검정 졸바지 및 바지를 착용할 경우 양말을 신는다.)
	7. 겨울철 코트와 페딩 잠바를 모두 허용하되 원색을 피한다. (겨울철 코트를 착용할 경우 코트 속에 동복 상의 대신 동복과 같은 색의 상의로 대신할 수 있다.)
	8. 여학생은 치마 대신 바지를 검정 및 감청색까지 착용할 수 있다.
머리	1. 머리 길이 및 모양은 자유롭게 한다.
	2. 염색은 검정, 갈색에 한해 허용한다.
	3. 파마는 스트레이트 파마에 한해 허용한다.
	4. 무스(헤어젤)는 소프트 제품에 한해 허용한다.
신발	1. 검소하고 단정한 운동화 및 학생용 구두 혹은 스포츠 샌들을 착용한다.
	2.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신는다.
명찰	교복 상의 왼쪽 가슴 선(주머니 윗부분)과 나란히 박음질을 하거나, 탈부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다.



-
- | | |
|----|------------------------------------------------------------------------------------------------------------------------------------------------------------------------------------------------------------------------------------------------------------------------------------------------------------------------------------------------------------------------------------------------------------------------------------------------------------------------------------------------------------------------------------------------------------------------------------------------|
| 기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각자의 소지품에는 반, 번호, 이름을 반드시 기입하며 분실을 예방한다.(소지품을 분실하였거나 분실물 습득 시 생활지도부에 신고한다.) 2.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용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책가방 없이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음란물, 담배, 라이터, 사복, 화장품 등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3. 색조화장(성인용화장)은 금한다. 4. 액세서리는 아래 규정에 한해 허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걸이는 밀착된 작은 것에 한해 1개까지 허용한다. - 목걸이는 실모양 목걸이에 한해 1개까지 허용한다. - 반지는 가는 것으로 1개까지 착용할 수 있다. - 그 외 피어싱, 팔찌, 발찌 등 규정에 없는 장신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 단, 액세서리는 교과학습활동에 안전을 이유로 저해되는 경우 교과담당이 제한할 수 있다. |
|----|------------------------------------------------------------------------------------------------------------------------------------------------------------------------------------------------------------------------------------------------------------------------------------------------------------------------------------------------------------------------------------------------------------------------------------------------------------------------------------------------------------------------------------------------------------------------------------------------|

※부칙

1. 위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 규정의 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물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신발 2항 실내화의 경우 조항은 유지하되, 실내화 폐지를 시범실시한 후 존폐를 검토한다.
4.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자치 권리의 제도적으로 보장하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연 미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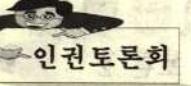
1. 학생회란?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써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학생자치조직이다.

첫 번째,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이다. 사회가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학생회를 학생들의 손으로 뽑지 않았었다. 학생회의 역사에서 살펴봤듯이, 그 때는 대표의 역할보다는 학생들을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개념조차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민주화되고 진정한 학생회를 만들자는 요구가 생겨났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바꾸려고 했던 것이 직선제였다. 임명제나 간선제로 선출되는 대표는 학생들의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교사·학부모라고 할 때 학생회는 전체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뽑힌 학생대표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학생회 활동이 막히는 부분이 많지만 교육의 한 주제로서 본다면 이와 같은 학생회 활동은 더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간부들도 스스로 대표기구라는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가로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대표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생회는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없는 학교는 없다. 어떤 학생회 간부들은 개별 학교가 필요에 의해 학생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학생회 활동은 교육정책에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활동이다. 교육과정에서 학교교육은 크게 교과, 생활지도, 특별활동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특별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자치활동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기본적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나 법의 현재 수준은 학생회 활동을 두도록 명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학생회 활동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정책과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학생회는 학생자치조직이다. 교육정책에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모든 학생회의 회칙을 보면 목적에는 '자치활동을 통하여' 또는 '자치능력의 배양으로'와 같은 표현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학생회 간부들의 경험 속에서도 학생회 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의 자치활동임을 알 수 있다. 어떤 학생회는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회는 십중팔구 학우들에게 외면 받거나 원망을 듣게 된다. 진정한



자치조직으로써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펴 나갈 때만이 학우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현실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전면 보장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 또한 해결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써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학생자치 조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의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의에 연상되는 것은 분명 학생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들로 구성된 학생회 운영위원회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학생회의 일부분이다. 학급의 회장, 부회장들도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 대표들이다. 학급의 회장, 부회장들은 대의원이라 불리며, 학생회는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포함하는 명칭이다. 그러니 학생회 활동이라 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의 활동을 함께 이야기해야 함이 옳다.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든 어떤 한 부분만 잘 된다고 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학생회의 역할

① 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학우들의 손에 의해 선출되고 학우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학생회들이 학교행사에 주력하고 있는데, 사실 더 힘쓸 부분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일반학우들이 지지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회가 학교 연간 행사만을 진행하거나 매달리게 될 때는 그런 바램들을 충족 시킬 수 없게 된다. 비록 우리의 활동이 크게 드러나지 않게 되더라도 학생회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또 실현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학우들의 신뢰가 더 쌓이게 됨은 당연하다. 물론 학생회가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야 하며, 수렴한 의견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한다. 듣기만 하고 비뀌는 것이 없다면 불신만이 쌓여가게 되기 때문이다. 학우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정을 통하여 의견수렴과 실현, 이를 알리는 활동을 잘 해야 한다.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는 의견 수렴과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다. 많은 학생회가 건의함을 설치하고, 인터넷 까페 운영을 하기도 한다. 몇몇 학교는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학우들의 요구를 전달한다. 급식이나 용의복장 문제와 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그런데 각 학교 현실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모두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학생회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학우들은 의견을 적극 표현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또 학급회이나 대의원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우들의 의견수렴 통로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학생회에서는 창조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이끌어낸다. 풍문여고에서 했던 '화진이'가 그 대표적 예이다.

(화진이 : '화장실 진솔한 이야기'의 준말로서, 보통 화장실 낙서를 많이 하는데, 풍문여고는 이런 지저분한 것을 해결하고 오히려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낙서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학교 화장실 각 칸마다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을 붙여놓았다. 실제로 이는 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학생회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

②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많이 제한되어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제한 당한다. 교칙이 대표적인데, 시대가 바뀜에도 이전 시대의 교칙들이 계속 바뀌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권리의 제한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제한당하는 학생들의 권리가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학생들 한 명 한 명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를 이용해서 이 뿐만 아니라 학생회가 나서서 학생들의 제한당하고 있는 권리를 신장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회가 나서서 학생들의 제한당하고 있는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두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용의복장규정을 포함한 학칙을 개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리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③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의 생활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수업 외에도 다양한 생활이 존재한다. 학우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학생회의 역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잘 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생일에 e-mail을 보내주는 학생회도 있다. 화장실에 휴지를 놓는 것이나 매점 메뉴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학생회도 있다. 언제나 민감하게 학우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④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민주시민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라는 말이 추상적이어서 이해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개인주의·기주의가 점점 심각해지는 학교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학생회가 만들어 가야하는 부분이다. 또, 민주시민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서, 서로에 대한 배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등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으나 뛰어 스스로 만들어갈 때 영향이 큰 것이다. 학생 스스로 민주시민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어떤 교육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걸 이끌어 내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다.

캠페인이나 선거는 모든 학생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게 된다. 또, 학생들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

⑤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칫 사회에 무관심하고 잘 모르게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마치 대학에 가서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학생들도 어른들과 같은 인간으로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회참여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생회다. 지역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농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나 우리의 농촌을 알게 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사회참여활동은 비단 특정한 문제에 대한 참여의 의미뿐 아니라 역사, 시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학생들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회에서 잘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학교에서는 4·19, 5·18과 같은 역사기념 행사를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정의를 위해 나섰던 사례로는 친일파 동상 철거운동이나 사립학교 비리 척결 운동 등이 있었다. 또, 2002년 있었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때 학생회가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들을 적극 홍보하고 함께 참여했던 경우도 있다.



3. 학생회 활동의 현실

● “선생님이 하지 말래요”

현재 학급회의, 대의원회의에서 나온 안건이나 건의사항들이 실제 학교에서 반영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심지어 학급회의 주제, 대의원회의 주제도 정해져서 내려와 회의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말이다. 또한, 축제, 학생의 날 행사 등 행사기획안을 학생회가 작성하여 담당교사에게 갔을 때 ‘OK’ 사인이 떨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학생회 간부들의 구상은 교사 선에서 멈추고 통제당하여 자유롭게 학생회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 두발 규정, 용의복장 규정 문제점, 학칙 개정, 급식 문제 등을 학생회에 건의하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회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눈치 봐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달라고 요구 했을 때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런 것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학생회 간부들은 이상하고 불순한 학생으로 낙인 찍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계 운운하며 그런 활동은 하지 말라고 하고 “너는 왜 학교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냐”고 훈계하는 것이 일반적 학교의 모습이다. 학생들의 권리가 전혀 인정되고 보장되지 않는 이런 학교 풍토 속에서 학생회 활동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학생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일단 선생님에게 검토 받아야하고 선생님이 “NO” 했을 경우엔 학생회간부들의 포부도 계획도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생님들의 허락 없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다. 정말 큰맘 먹고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학생회는 늘 학교 측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 측의 태도이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학생회 활동 활성화라고 공문을 내려도 이런 학교 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 학생회 활동 제도적 보장 미비 (학생회칙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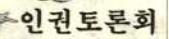
- 학교 측의 학생회 활동 통제 및 제지

- 학생 교사간 학생자치활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 학교 측의 학생회 활동에 대한 비협조적 풍토

● “지원금이 너무 없어요.”

예산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한다면 그 결과는 둘 중 하나이다. 학생회 활동을 못하거나 학생회 간부들이 사비를 털어서 활동을 하거나... 학생회 활동 예산을 넉넉히 책정하는 학교는 거의 드물다. 학생회 간부들도 언제 어떻게 예산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안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벽이다.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인 교사가 있는 경우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하여 일정정도는 따내겠지만 일반적인 학생회 간부들은 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예산을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접근 할 수 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



서 학생회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어떤 학교는 일반학생들에게 모금통을 돌려 학생회비를 마련하려 했던 사례도 있다. 학생회에겐 예산권은 없고 학교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어렵게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범위를 넘어가는 활동에 대해선 꿈도 꾸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학생회 예산권 미비

- 학생회 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 미흡

● 시험, 공부 때문에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학생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일 것이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등 시험 전후로 시험의 압박으로 학생회 모임을 한다는 것, 학생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모든 학생회가 관행적으로 시험 준비기간에 들어서면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시험 끝나고 다시 재개하게 된다. 또한, 고3이 되면 임기가 6개월 동안 남아있지만 학생회 활동에 손을 떼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생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공부와 성적 때문에 학원도 가야하고 보충도 해야 하고 과외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쪼개어 학생회 모임을 하고 학생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닌 것이다.

-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학생자치활동은 천대 당함

- 학원, 야자, 보충 등 학생회 활동할 시간 부족

4. 학생회 활동의 문제점 및 대안

1)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4장(학교) 2절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31조의 2(결격사유), 32조(기능), 33조(학교발전기금), 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32 조 기능을 보면 ①학교 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⑩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⑫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함을 알 수 있다.



많은 부분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31조(설치)에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고만 나와 있어 학생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내려 보내진 공문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해석을 "학생대표도 참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해석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만 한 것이고, 참관시키는 것은 개별학교 교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관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학교 운영을 의결하는 학운위에 학생 대표(학생회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법문항 수정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권리와 활동을 어디에도 보장하지 않는 초중등 교육법 조항들을 개정하고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 제도적인 문제

① 의미 : 학생회 활동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이 제도적(법, 규정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일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어떤 문제들이 있나?

<표1> 제도적 문제의 분류

제도적 문제를 나눠보면	정책 · 이념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법	학운위 참여×
		관련법 보장×
		학생활동 억압 조문(징계 등)
	학생회칙	지도위원회
		예산권×
		자격제한
		회칙에서의 목적
		회칙에서의 금지활동
	보장 안 됨	교사 맘대로
		학생회살기기 지원×
		예산권×
		표현자유×
		결사항동 자유×

2) 관련 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의 자치활동 보장은 모호하고 부족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



치활동의 보장)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학생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으며 학교장에게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권 위임되어 있는 현실이다.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과 같은 교육관료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제대로 지원할리는 만무하다.

3) 의결권이 없다

학생회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은 진정한 의미의 결정이라 할 수 없다. 학생회칙에서 대의원회의의 기능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결이라고 나와 있지만 반쪽짜리 의결이다. 모든 학생회의 활동은 지도위원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의원회의의 결정사항이 지도위원회를 거쳐 짤리는 등의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학생회 활동들이 학생회 지도교사의 선에서 통제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지도위원회와 같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일이 아님에도 학교안에서 자연스럽게(교사의 성향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학생회 활동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4) 예산권이 없다

학생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학생회에는 예산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있지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법에서는 자치활동에 관한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회칙에서는 학생회가 짠 예산안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통과된다고 나와 있다. 학교의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만을 학생회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함에도 학교에서는 예산권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예산권이 없음으로 해서 학생회 활동의 기획부터 제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학생회칙에는 학생회 예산의 경비는 학생회비로 충당된다고 나와 있지만 현재 등록금을 낼 때 학생회비라는 명목으로 내는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운영회비(또는 다른 명칭으로) 등으로 내고 있다. 학생회 예산으로 쓰여 족야 하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회 예산은 편성되고 집행되는데 학생회 예산은 학생복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학생복리비라는 개념이 자치활동 예산이 편성될만한 성격인지가 불분명하고 학생복리비 내의 학생회 예산은 전체 학생회 예산에서 학생회가 자유롭게(학생회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일부분이다. 나머지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편성된다. 예로 축제예산은 특별활동부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한 학생회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각 부서에 나누어져서 편성되는 상황은 학생회가 예산권을 갖는 것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덧붙여 학교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다.

5) 학생회 간부의 자격제한이 있다.

학생회 간부가 되는 것을 성적이나 징계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성적제한은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학교들이 있으며 징계로 인한 제한은 거의 모든 학교가 있다.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데 학교에서 생각하는 기준으로 학생회가 선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학생들의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명시됨이 옳다.

6) 학생회칙 상에서의 학생회의 목적은 맞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회칙의 목적에서는 “본 회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거나 “본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틀린 내용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대표로서 다양한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는 국가의 자치활동개념에서 비롯되는 결과이다. 큰 개념이 바뀌는 것과 세부적 규정에서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7) 학생회칙에서 금지활동이 불필요하게 존재 한다.

정당,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활동을 막거나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는 것 등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은 평소에는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학생회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학생통제를 위한 규정이다.

8) 표현의 자유가 없다.

학생회가 자율적으로(검열을 받지 않고) 게시판을 운영하는 학교는 많지 않으며, 모든 게시물은 검열을 받고 학생부장(혹은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의 도장을 받아야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학교 방송 역시 선생님의 통제를 받는다. 학생회 활동이 학우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떠한 검열 없이도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해서 활동을 알리고 의견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게시판의 운영이나 방송의 사용 등은 규정 등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모호한 규정(학생생활규정의 학생 선동 등)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

9) 결사, 행동의 자유가 없다

허락을 맡지 않은 설문조사, 서명운동은 학생회가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교사, 지도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학생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이러한 활동

들이 보장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라도 학교에서 이런 일로 징계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회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부분이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에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교장은 징계규정을 만들고 마음대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징계에 대한 제도도 민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10) 학생회실, 기기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학생회가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할지 모여서 회의할 장소조차 없다면 학생회 활동이 잘 될 수가 없다. 학생회 활동은 애들 장난이 아니며 많은 업무가 있다. 이런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실, 활동기기는 기본 지원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도적 보장은 없다.

③ 대안

지금까지 다양한 제도적인 문제들을 열거했다. 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①현행 제도에서 학생회 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는 ②제도적으로 학생회 활동의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제도를 바꿀 때에는 억압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거나 억압하는 내용을 바꾸는 것, 그리고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우리는 지금까지 ‘학생회 법제화’라는 구호로만 이야기해왔다. 학생회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제도적인 측면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듯이 이야기해왔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학생회 법제화’의 법안 내용을 잘 짜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이야기해왔다. 즉, 자치활동의 권장·보호만을 명시하고 있는 법조문을 학생회실을 보장해야한다거나 학생회의 예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지도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문제들을 조사하면서는 그간 이야기해왔던 법제화(물론 우리의 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가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중등교육법이라는 상위법에 학생회의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학생회칙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을 훨씬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보다는 그에 걸맞게 제도화를 해야 한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회 법제화를 이야기할 때 바꾸자고 하는 부분)만 바뀐다고 해서 학생회 활동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하며 법을 바꾸는 것만이 아닌 학교현장의 세부적



제도들 또한 다양한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17조를 개정해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학생회 활동을 탄압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기본법 제12조 3항의 내용으로도 억압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제정이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지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박탈하는 법개정을 하려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사회의 어느 부분에서도 스스로 바뀌는 일이란 없다.

또한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 이념과 철학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이념 또한 쉽게 바뀔 수가 없다. 현재의 교육 관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정책이란 외국의 정책을 모방하고,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적어본다.

1) 학생회칙의 개정

학생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학생회칙이다. 지도위원회나 금지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일단 바꾸는 것부터 학생회 활동의 보장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학생회칙의 개정이라는 것이 선거 시기나 부서를 바꾸는 것 등 쉬운 부분도 있지만 교사들이 생각했을 때 절대 넘겨줄 수 없는 권한에 관한 부분(지도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학생회칙을 개정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상위법에서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2) 관련법의 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보장

학생회 활동을 학생회칙보다 상위법에서 보장한다면 학생회칙도 그에 맞게 개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조사한 관련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회계규칙 등이 있다. 헌법이 제정·개정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책과 이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정책과 이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장치로는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 권리의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교에서의 인권의 중요성

손 순희(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 상담위원)

1.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최근에는 다양하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인권향상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서 아동도 제외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학생이 갖는 위치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어른에게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아동을 인격적 존재 보다는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크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학생이 체벌을 받게 되는 이유를 보면 숙제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빠서, 집에 늦게 귀가해서(지각해서), 반친구(형제)와 싸워서 등 학업과 일상생활(학교생활) 등의 이유로 체벌을 받는다. 이것은 아동의 일상생활 즉 가정과 학교에서 어른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체벌을 받는(교육의 대상)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기는 하나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학생에게는 교육 받을 권리(교육권)가 있다. 하지만 교육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권리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언론이나 다른 매체들의 영향으로 아동들은 이른 시기부터 인권이 있음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른들은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늦어 세대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즉 어른들이 행하는 행동이나 언어가 아동에게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어른들은 그것은 인권침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이 창의적이고 자기 주장을 하도록 교육하면서 간혹 자기 주장을 하는 아동에게 교사나 어른은 말대꾸를 하는 것으로, 예의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2. 인권의 부재는 사회문제다.

아동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아동이 느끼는 체벌 후의 느낌은 정말끔찍하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사례4>에서 보듯이 중학생인 남학생은 교사를 죽이고 자살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보이기도 하며 사례1>에서와



같이 불안과 공포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사례3>, 사례5>과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부모가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각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아이의 자존감은 거의 사라질 뿐 아니라 죽어버리고 싶다고 까지 한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자살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공부를 못한다고 비관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사회가 오직 한가지 공부이라는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사회로 인해 꿈을 키워 나가야할 청소년이 비관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교사에게서 듣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큰 손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언어나 행동, 은근히 교사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왕따 당한다고 느끼는 고립감 등으로 아동은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학부모도 체벌에 대해 우호적이기 때문에 아동이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아이의 심리상태를 살펴 위로하기보다는 ‘니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 선생님이 때리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아동은 자신이 체벌을 받아서 우울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사례1>에서의 내담자 역시 그렇게 아이에게 말했고 아이가 ‘괜찮아 엄마, 내가 잘 하면돼’라고 했으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실정에서 보면 교사 1인이 돌봐야 하는 아동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사가 스치며 지나가듯이 던지는 말에 아동은 상처를 받기도 하며 희망을 얻기도 한다.

사례 1> 떠들거나 잘못을 하면 화장실 구석에 서있기

초등학교 4년

잘못을 하면 아동은 화장실에 혼자있게 하는 벌을 받았다. 내담자의 자녀는 화장실에 있는 시간은 짧게는 20분에서 최대 2교시에서 4교시까지 있었다. 그 후 성격이 꽤 활했던 아동은 엄마에게 학교에 데리러 와 달라고 요구하거나 저녁이 되면 집안에 있는 불들을 다 켜놓고 있고 새벽수영을 가는 엄마를 따라 일어나 엄마가 올때까지 눈 감고 있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다. 고등학생인 누나를 데리러 가는 늦은 시각에 아동도 함께 가자고 잠옷을 입은 채 엄마를 따라나서 기도해 최근에는 함께 누나에게 간다고 한다. 화장실에 격리되었던 적이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아동이 말하였다.(2005-11)

사례2> 봉사활동 중 뒤통수를 맞음

고1 학생으로서 교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권리이다. 그러나



봉사활동으로 기관에 갔다가 옆에 떨어진 휴지를 보지 못했는데 교사가 휴지를 주으라는 말에 ‘휴지, 어디요?’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뒤통수를 맞아 기분이 나빠지 학생은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교사가 들었다. 이 일로 담임으로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리니 학교로 오라는 날에 가지 못하고 하루 전에 갔다. 학교에 가서 아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욕한 것) 모와 함께 용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사는 ‘개에게 물렸다.’는 표현을 모에게 사용하면서 화를 냈다. 교장에게 가서 문의하니 교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그 후 담임으로부터 전학을 보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교사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어했으며 결석을 했다. 담임은 아이가 결석을 하니 이마다가는 퇴학처분을 받게되니 자퇴서를 쓰라고 했다. 부는 퇴학처분을 받게 되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지 못할 것 같아 자퇴서를 쓰고 온 길이며 어찌해야 할지 상담을 의뢰했다. (2005-11)

사례3> 아이가 지각하고 수업시간에 존다고 어머니가 무릎꿇고 각서

중3

담임의 언어폭력과 체벌이 심하다. 3학년 올라가서 5분 늦었다고 마구 때리고 전화해서 “맨발로 빨리 오세요.”, 놀란 가슴으로 있는데 “택시타고 빨리 오라니까요.”라며 일방적을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불러 호통을 친다. 아이는 얼굴을 마구 때려서 학교가기 싫다. 다른 반인 친한 친구가 놀러 왔는데 “도둑놈아 왜 우리반에 왔냐?”, “도둑질하러 왔냐?” 한다. 아이는 폭력이 반복되어서 차라리 죽여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표현을 한다. 토요일에는 1, 2학년 등 여러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더러운 놈아 너는 인간쓰레기야” 엄마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 인내심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르치세요.” 아이가 지각과 수업시간에 졸았다고 그리고 조퇴가 잣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각서를 쓰라고 해서 썼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이를 어떻게 때리던 상관하지 않겠다.” 아빠도 똑 같은 각서를 써오라 한다. 아이는 엄마가 무릎을 꿇고 각서를 쓰는 것을 보고 홍분해서 울고 난리였다. 교장과 교육청에 문의해도 선생님이 잘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만 한다. 이비인후과에 가니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해서 정신과에 갔더니 선생님에 의한 심한 우울증진단으로 약처방을 받았다. (2005-9)

사례 4> 체벌이 두려워 투신자살

지난달 말 교사의 여고생 구타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네이션은 생생하게 들리는 둔탁한 구타 소리에 경악했다. 그러고나



서 며칠 뒤 교사의 체벌을 두려워한 고등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향신문 2004-04-04 19:28)

사례5> 담배로 여러차례 적발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여러 차례 적발된 고등학생이 투신자살했습니다.
어머니까지 학교에 불려오자 처벌 압력에 괴로워 했다고 합니다.(kbs 2004-4-3)

3. 교사의 역할

3-1. 체벌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들에 의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체벌도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조(신고의무 등) 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에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 교사는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학교체벌은 폭력에 대해 신고의무를 갖고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체벌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 준다. 또한 교육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사의 체벌은 학생으로 하여금 잘못했을 경우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한다 것이다. 이것은 이후 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체벌로 행동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며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학습적 효과를 보여준다. 학생도 체벌의 의미를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것 교육적 수단,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 학생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 등의 의미를 부여하며 성인들도 100% 잘못된 것은 아님, 가급적 필요함, 교육의 일부분, 긍정적인 측면, 당연한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 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어 학년이 높아 갈수록 폭력의 허용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다. 그 외에도 체벌을 받는 학생 외에 체벌을 받는 모습을 보는 동안에도(간접 학습) 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나타내며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하기도 한다. 간접학습을 통해 체벌에 대한 허용도를 높인 학생 역시 직접학습으로 인한 학생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2003년 제네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한국보고서 심사회의에서 지적되었듯이 학교 내 체벌이 금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내 체벌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아동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교사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체벌도 허용해서는 않되는 이유다. 물

론 교사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방법을 동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체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체벌을 하는 교사가 가정 폭력으로부터 힘들어 하는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당연히 할수 없을 것이다.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체벌을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막기는 어려운 일이다.

3-2. 학생생활 규정

학생들의 규칙을 정하고 있는 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 전의 이야기다. 하지만 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일을 학생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학교, 학부모가 해왔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을 담아낼 수 없었다. 학생생활지도에가 가장 큰 비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용의복장, 두발 등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해석을 학교에서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학부모와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로 구성되었는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인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학부모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사례의 일부는 우리회 학부모상담실의 상담내용임.



인권 교육의 필요성

장위초등학교 이 기 규

흔히 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회의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선생님 중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교육에 대한 반응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교육은 아이들에게 불순하고 급진적인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둘째, 인권은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권리의 중시하기 때문에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경시할 수 있다.

셋째, 인권교육은 해야겠지만 인권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무리다.

저는 이러한 반응들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도 인권입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 권리가 무엇인가 배우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위해 무엇을 실천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은 그 자체로 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¹⁾과 1989년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이해와 관용, 평화를 증진하는 데 두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 유엔총회는 1995년 1월부터 2004년에 이르는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UN Decades for Human Rights Education)을 선언하고 국가 인권 교육 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설립을 포함한 실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유엔이 각 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 교육을 주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책임



을 다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울러 유엔으로 하여금 각국의 인권 교육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내에서의 구체적 실천 움직임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²⁾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라는 Hugh Starkey(1994)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권리 의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수준이 개선되기를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권 교육은 단순히 인권 활동가나 성인들 위해서만 행해지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초등교육에서부터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인권 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획들이 마련되고 내실 있는 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인류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가장 먼저 현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아이들, 자신만 아는 아이들에게 권리 의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은 인권 교육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치면 “떠드는 것도 내 권리 예요” 혹은 “장난치는 것도 내 권리예요”라고 이야기하며 학교의 기본적인 규칙을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교육은 개인의 권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저를 포함한 인권 교육을 위한 교사모임(www.inkwonedu.x-y.net)의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험한 인권 교육의 결과들은 이런 인권교육에 대한 잘못된 걱정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인권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선생님들도 인권 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비인권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반성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몇 년 전 후배 교사가 저에게 자신의 반에 왕따 학생이 있다는 것을 9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부끄럽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말못할 고민

1) “이 선언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에, 그리하여 이제 유엔총회는 …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 중에서

아시아 인권 현장에도 “정부 기구, 비정부기구, 교육기관들은 인권의 내용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라는 말로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을 하며 살아온 아이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 한 반을 이끌어 가는 교사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왕따의 문제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인권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다른 또래 집단과 융화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획일적인 교육 환경의 강요와 또래 집단 생각이나 문화에 조금이라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융화될 수 없고 인정 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패거리 의식이 이러한 왕따 현상을 조장하게 합니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만을 가르쳤던 교실에서 왕따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 당연할 결과였습니다.

만약 이 선생님이 그 전에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권 교육을 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발자국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인권 교육을 교실에서 실천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경쟁과 이기심, 획일화와 집단주의를 가르치는 교실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대한 자아 존중감과 서로에 대한 존중, 차이와 다름이 인정되는 새로운 공동체 교실을 만들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셋째, 인권 의식이 비약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0년 4월에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의식 조사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아이는 56.0%에 지나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 9.1%만이 학교에서 인권이란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과반수에 가까운 아이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없이 인권을 피상적인 부분에서 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권이란 말을 들어 본 56% 중 방송 매체에서 피상적으로 인권을 이란 말을 들어 본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은 사회 구성원의 인권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 소수 활동가와 대학생들, 혹은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졌던 지금 까지의 인권 교육으로는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이 신장되는 것을 기대하기에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인권은 한 사회만의 권리가 아니라 초국적인 차원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응뿐 아니라 인권 침해를 허용하게 만드는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혁파하여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다 균원적인 차원



의 인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정부 기구(NGO)를 중심으로 했던 인권 운동은 초국적인 연대와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시민 인권 운동”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³⁾

또한 지금까지 인권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촌의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식과 실천 방법을 익한다면 예방적 차원의 시민 인권 운동과 인권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인간 존중과 권리 의식을 배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끊임없이 발생되는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과 인권 의식의 신장을 위해선 초등교육 현장에서부터 체계적인 인권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인간을 존중하는 교육,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베티 A 니어든의 “인간 존엄 교육(1995. 펜실바니아 대학 출판)”에 보면 인권 교육은 만 5살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존중과 관용, 다양성의 인정 등이 아이들에 교육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 교육에 대해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운 용어나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침해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실천 방법들을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과 다양성의 인정이란 지식과 이해의 측면 뿐 아니라 감수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생활 공간에서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느끼고 다양한 문화와 개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실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다 공동체 안에서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학교와 가정 내에서 자아 존중과 관용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인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교

3) 카루난(1995)의 견해에 따르면 인권 운동은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전략’을 가지고 ‘초국적 연대’ 활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NGO’라는 비정부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인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이라면 중등교육 과정에서부터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도 상관없겠지만 인권적 생활 태도와 감수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인권 교육을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교육에서의 인권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부모 사이에서 존중과 책임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인권 침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실천 방법으로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인권 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의 경험을 하는 것은 미래의 인권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생활하게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다섯 째,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인권 교육 프로그램들은 엠네스티나 인권 운동사랑방 등에서 외국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되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그 대상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인권 활동가를 중심으로 인권 교육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교육, 인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권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인권적인 학급 경영, 인권 교육의 교육과정 수립 등의 일에 적극적인 인권 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인권 의식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현직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지역사회와 가정의 매개고리 역할을 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 교육에서의 현직 선생님들의 역할은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인권 교육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확고한 인권 의식을 기반으로 한 인권 교육을 준비할 때만이 우리사회의 인권 의식의 신장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 필요한 체계적 인권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천해 간다면 일회성에 그치고 확산되지 않는 현재의 인권 교육이 좀더 풍부해지고 인권 의식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학생 인권, 그리고 교사의 역할

배경 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인권의 ‘보편성’과 아동의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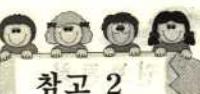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

— ‘세계인권선언’ 전문 중에서

인권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권리’,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그러하기에 인권은 ‘보편성’(universality)을 핵심적 대원칙으로 삼는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보편성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에 대한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날 보편성이라는 인권의 대원칙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주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관념은 근대 자본주의 세계의 역사적 등장과 더불어 창조된 개념이었으며, 이후 근대 자본주의 세계의 정치 질서를 규율하는 핵심적 원리로서 터잡아 왔다. 인권의 원리는 원래 부르주아계급의 ‘특수 이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하기에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성에 대한 승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권 보장이라고 주장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르주아계급은 그러한 인권의 원리가 ‘보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신분제와 특권에 기반한 봉건질서에 대한 도전은 부르주아계급만의 운동이 아니라 광범위한 민중들의 운동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부르주아계급은 ‘보편성’이라는 형식을 빌어 자신들과 민중들의 공동의 적은 오직 보편성에 대한 부정의 형식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특권에 기반한 구질서’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주도하여 건설할 새로운 질서는 민중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초계급적(보편적) 질서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했다. 결국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형식’은 혼존 질서를 뛰어넘어 부르주아혁명을 더 멀리 밀고 나가고자했던 민중들의 위험천만한 요구를 희석화시키기 위한 부르주아계급의 대응물로서 등장한 것이었다.

부르주아 계급의 특수 이해를 표현하기 위한 인권이 동시에 형식적 수준에서나마 ‘보편성’이라는 원칙을 선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인권의



원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상당한 혁명적 함의를 지닌 원리로서 남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피지배계급과 모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언어가 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을 분할하고 위계와 불평등을 강요함으로써만 유지된다. 성차별주의나 인종주의, 연령주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제인 것이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의 주체를 가능한 한 제한하고 인권의 형식적 승인을 통해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끊임없이 봉쇄함으로써 인권의 혁명적 성격을 거세시키기 위한 부르주아계급의 대응이 계속되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소수자들은 인간이기에 앞서 외국인, 가난한 자, 여성, 아동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권의 주인임을 부정당한 채 차별과 억압, 착취와 빈곤의 굴레 속에 내몰려있다. 특히 아동⁴⁾의 존재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아동은 인권의 주체인 '개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결정권을 갖는 온전한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인권의 보편성을 논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집단으로 남아있다.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억압받는 집단들이 여성운동, 흑인운동, 노동운동, 선주민운동, 동성애자운동 등으로 스스로를 조직하여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지금에도, 아동의 경우는 거의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다만 다른 운동들의 한 부문으로 주변적으로 아동의 권리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아동 역시 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사회 속에서 승인받기 위한 운동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운동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라는 대표적 성과물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은 선언적 수준에서만 인권의 주체로 확인되고 있을 따름이며, 각국의 현실 속에서는 아동기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온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을 보편적으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동은 각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다. 문제는 아동에 대한 한 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곧 아동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인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과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개의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욕망을 대리 실현해줄 존재로, 국가와 자본의 필요에 따른 능력을 갈고 닦고 효율적이고 순종적인 노동력으로서 준비되어야 할 존재로만 간주될 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4) 이 글에서 '아동'은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만 아동은 '자비로운 성인'에 의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주어진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동에게는 곧 통제와 억압이 따라붙는다. "그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아동의 소망과 존엄성에 대한 투쟁은 쉽게 묵살되고 일상화된 통제와 검열이 정당화된다. 여기에는 아동을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리행사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아동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로서 부모와 국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 온전한 하나의 인간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배경에는 아동은 순진무구한 존재이며 미성숙한 존재라는 관점이 깔려있다. 아동은 순진무구한 존재이며 따라서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곧 아동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의 세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낳았고 아동은 가족과 학교라는 격리된 공간을 벗어나서는 안될 존재로 취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은 지식과 권력의 형성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성인들이 허용한 지식과 그들의 통제하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공적영역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 차단당했다. 이것은 아동의 무지(ignorance)와 무권력 상태(powerlessness)를 강화함으로써, 학대와 폭력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3. 20세기 아동권리운동의 도전과 영향

국가에 의한 아동보호정책이나 민간차원의 아동구제운동의 수준을 넘어 아동의 권리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가능해진 일이었다. 20세기 전반의 아동권리운동의 주된 관심은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국한되어 있었고 아동의 필요를 중심으로 사회가 아동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주로 고민한 것이었지만, 이 시기 아동보호운동은 그것을 아동의 '권리'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데 19세기의 아동보호운동과 차별성을 갖는다.

19세기말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은 1차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아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더욱 증폭되었다. 영국의 아동보호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아동구호기금'(British Save the Children Fund)은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기준을 담은 '아동의 권리 선언'을 기초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이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다시 채택됨으로써, 최초의 국제적 아동권리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즉 '제네바선언'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 보호를 하나의 과제로 인식하게 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이 제네바선언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는 점은 명시하고, 아동을 재난과 질병과 기아, 착취로부터 구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선언이 기준의 아동보호운동이나 국가의 아



동복지정책과 구분되는 것은 그것을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제네바선언이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선언의 전반적 기조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동을 권리의 행사 주체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선언이 전체 아동의 해방이나 인권을 독자적으로 고민한 결과 나온 선언이 아니라, 시급한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의 아동을 우선에 두고 고민한 결과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이기도 하다.

동시에 러시아혁명을 비롯하여 각국에 사회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1차대전으로 이후 전쟁과 인간 소외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반제국주의·반권위주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을 계기로, 교육에 있어서도 엄격한 국가의 통제와 학교규율의 지배, 권위주의적 교육으로부터 아동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신교육'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초기 신교육운동은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의 독점자본주의화 경향이 심해지면서 전통적 고전 중심의 중등교육으로는 산업상의 요구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중등교육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신교육운동은 격동의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교육에 있어 아동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교사의 봉건적인 권위의식과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학교제도와 교과과정으로부터 아동을 해방하고, '아동 중심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교육 운동의 공통의 목소리였다. 이러한 신교육운동은 단지 교육 내부에서의 운동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동의 해방과 교육의 개혁을 통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이들 새로운 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 추구했던 이상사회나 그 이상사회를 일구어내는 과정은 모두 달랐지만, 아동의 자기 책임과 자율성-아동에 의한 학교의 자주관리까지를 요구한 주장도 있었다-을 중시하며, 교사와 학생의 동등한 관계 수립, 체벌의 금지, 실험적 교수방법의 도입, 생활에 밀착한 교육내용 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특히 아동의 해방과 권리의 관점에서 낡은 교육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교육의 역사에서나 아동 인권의 역사에서나 중대한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는 2차대전 이후의 본격적인 아동권리사상의 확산과 국제적인 아동 권리 보장제도의 발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신교육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H. Wallon은 "신교육을 어른들에 대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미 아동의 권리는 이미 루소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150년을 거쳐 겨우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신교육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장기적인 경제불황에 휩싸이고 정치 불안이 계속되면서 기존의 자신들의 지위에 위협을 느낀 중산층을 지지 세력으로 한 파



시즘의 물결이 거대하게 일기 시작하면서 아동은 또다시 도구화되었다. 파시즘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배양해 온 내셔널리즘과 경제불황에 따른 실업의 불안, 자본주의의 의회제도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절망과 혐오 등이 결합되면서 출현한 것이었다. 파시즘의 지배 하에서 도구주의적 아동 정책이 전국가적 규모로 전투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또다시 아동들은 국가와 지배세력의 통치 도구화되는 비극에 놓여야 했으며,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경험은 인간의 존엄한 삶과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2차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에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권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국제적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성문화하고 이행절차를 담은 국제인권법이 체계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 바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의 선포와 함께 보편적 인권에 대한 공감대와 논의공간이 더욱 확장됨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국제적 차원에서 성문화하기 위한 노력도 활성화되었다. 초기에는 전쟁이 낳은 일시적 위기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 즉 고아나 난민아동, 기아나 영양실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새롭게 탄생하는 신생 독립국들의 아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까지도 포함하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동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특히 '황금시대'라고까지 불린 전후의 경제 번영과 복지국가로의 전환의 움직임은 아동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아동의 권리 선언이 성문화되기에 이른다. 195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1944년의 제네바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동에게 '이름과 국적에 관한 권리'라는 최초의 '시민적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사회권이 함께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지배적 아동관으로부터 일정한 방향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 선언의 원칙은 1966년에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일정하게 반영하여, 아동의 특수한 지위와 아동 인권의 현실을 고려한 조항들이 삽입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조약들은 조



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모든 권리가 아동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나 아동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조약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없었기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후 아동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던 전통적인 아동관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1960년대 후반에 전세계를 강타했던 혁명의 물결이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 '68혁명'은 전후 자본주의의 위선과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지배체제의 일부가 된 구좌파들을 비웃으면서, 반전 평화, 여성해방, 흑인해방, 학생 자치 등의 요구들을 폭발적으로 분출시켰던 과정이었다. 특히 프랑스 5월혁명을 비롯하여 68년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운동은 억압적인 학칙과 불평등한 교수-학생 관계, 교수들의 위선, '승인받은' 지식의 일방적 주입 등에 맞서 새로운 학교질서와 교수-학생관계, 새로운 교육과정과 학생 자치를 요구하였으며 직접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운동은 중등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쳐 고등학생들도 직접 자신들의 독자적인 조직을 창설하고 동맹휴업과 거리 행진을 주도하면서 학교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운동은 아동들 스스로 자신의 조직체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인권을 운동의 중심에 놓고 전개해나간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아동 인권의 역사와는 다른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었다. 그동안의 아동 인권의 역사는 주로 '성인에 의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이나 주변화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뿐이며, 아동중심주의를 내세우는 경우에도 강압보다는 격려가, 인위적 교육보다는 자연적인 발달과 아동의 이해를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더 효과적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제 68혁명을 전후로 '아동 스스로 자신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이를 지원하는 담론들이 형성되면서,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아동은 독립과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힘을 널리 확산되었다. 비로소 진정한 아동 인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도전은 아동의 권리와 교육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17년 11월 영국에서 발간된 「Children's Rights」와 같은 잡지를 비롯하여 고등학생들의 운동을 지원하는 출판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은 아동을 의존과 무권력의 상태로 몰아넣는 '아동기'라는 신화가 가진 억압적 성격과 권위주의적 교육현실을 비판하는 한편, 학교내 징계절차나 형사절차 시의 권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한 아동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 인권을 주제로 한 각종 회의가 조직되었고, 학교



의 운영과 교과과정에 학생들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이반 일리치의 『탈학교사회』(The Deschooling Society, 1970)가 출판되면서 '탈학교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탈학교운동은 아동의 권리운동과는 다소 구분되었지만,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빌미로 아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제도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대안적 교육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주장은 학교의 권위와 지배질서에 대한 전복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득이 되는지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그릇된 가정에 기초한 주장'이라며 비난받았다. 교사단체들도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이 교사의 권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지지 입장의 표명을 주저하였다. 당시의 논쟁을 통해 제기되었던 아동 권리의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공장법이나 아동보호법과 같은 법률은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법률상의 아동의 지위는 '아동은 부모가 아니면 국가, 즉 누군가의 재산'이라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2)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 의무 교육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교생활은 수감생활과 다름 없다. 3)교육적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학교운영에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학교규율의 제정과 커리큘럼의 결정에까지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4)결사의 권리; 학생에게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고 동맹휴업과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두려움없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진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장이나 교사에게 부정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하는 '부모대위설'(친권이양론)에 기반한 아동의 법적 지위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6)용모를 통한 자기표현의 권리; 부모에게 교복 착용의 동의서를 받아내는 일은 '온화한 형식의 갈취'이며, 학생 자신이 서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7)표현의 자유; 교지, 동아리, 학회 활동 등에 대한 자의적인 검열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기숙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인 편지에 대한 검열도 폐지되어야 한다. 8)체벌의 폐지; 체벌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일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9)신앙활동의 자유; 아동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하며, 학교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특정 종교의 강요도 거부되어야 한다. 나아가 종교적·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부터도 아동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10)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아동은 모든 지식과 비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성(性), 사회에서 폭력이 수행해 온 역할, 술이나



담배 등에 관한 지식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적 자유를 인권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외에도 실수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make his own mistakes), 선거권, 후견인의 선택권,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제기되었다.

이들 주제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도전에 힘입어 아동 권리의 사회적·국제적 합의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었고, 그 결과 68혁명을 전후하여 각국의 법률이나 판결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우선 1975년 영국에서 제정된 ‘아동법’은 법적 분쟁에서 아동을 소송의 당사자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요구를 반영하여, 법원의 판결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동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아동 자신의 이익이 부모나 보호자, 지역 당국의 입장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나온 것이었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가진 인권침해적 성격을 비판하는 주장들이 잇따르면서, 스웨덴에서는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당시 학생들이 가진 헌법적 권리, 특히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 자의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소송이 상당수 제기되면서,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들이 잇따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1969년에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사건을 통해서는 학생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이 사건을 맡은 연방대법원은 “학생이라고 해서 헌법적 권리로 보장 받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교문앞에서 포기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학교운영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972년의 ‘Massie v. Henry 사건’의 경우는 학교당국이 두발의 길이에 관한 교칙을 제정할 권리를 가졌는가와 두발길이에 관한 학교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처벌한 학교당국의 조치가 합헌인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두발의 길이가 건강이나 타학생에 대한 안전이나 수업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두발의 길이에 대한 학교의 규칙은 미성년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국친(國親) 사상에 의거하여 아동에 대해 자의적으로 가해진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제동을 거는 판결들도 이어졌다. 68년을 전후하여 미국에서 나온 판결에서는 소년법원의 절차에서도 미국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친 사상에 따라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고 교정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비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금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아동도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



을 확인했다.

이렇게 68혁명을 통해 제기되었던 아동 권리에 대한 주장들은 이후 급진주의적 성격은 많이 잃어버렸지만, 탈학교운동이나 대안교육운동, 학교에서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 사회과학의 발전 등을 통해 그 문제의식이 계승되었다. 또한 아동의 권리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여성, 소수민족, 흑인, 장애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문제로까지 관심이 확대되어갔다. 유엔 내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구속력 없는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을 통해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선언” 20주년이 되던 1979년이 유엔에 의해 ‘국제 아동의 해’로 지정되면서, 아동 권리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일반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그 결실로 마침내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역사적인 탄생을 보게 되었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성문화한 이 협약은 2000년 1월 현재, 유엔이 채택한 여러 인권조약 가운데 191개국이라는 가장 많은 비준국을 보유한 영향력 높은 국제조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은 성인과 다름없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의 주제라는 것, 아동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시기이므로, 아동이 행복한 아동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협약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위치시키면서 과거 아동에게 분명하게 보장되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마땅히 향유해야 할 권리로 인정하는 한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난민아동, 장애아동, 형사절차과정에 있는 아동 등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전개되어 온 아동 권리운동의 중요한 유산들이 이 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엔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이행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분류기준	구체적 권리 조항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유지할 권리/ 표현의 자유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 명예, 신망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아동의 존엄성에 합치되는 학칙 운영/ 인격과 능력의 최대한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등 유엔의 원칙에 부합하는 교육목표의 설정/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과 지원
양육과 보호에 대한 권리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와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금지/ 가정환경을 상실했을 경우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입양 시의 권리/ 양육 및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적 심사/ 난민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보호, 기족재결합에 대한 권리
특별상황 하에서의 보호조치	법적 분쟁 상황 하의 권리(사형 및 종신형 금지, 고문금지, 성인과의 분리, 범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회복귀 지원 등)/ 착취 상황 하의 권리(성적 착취와 학대, 경제적 착취, 악취 유인 및 매매 등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무력분쟁 하의 권리(적대행위 참여 금지, 15세 미만의 강제징집 금지)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정부의 조약 홍보·교육 의무

4. 인권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본 학교

1) 학교교육과 불평등

오늘날 학교는 흔히 사회화의 기능과 인재의 선발과 사회적 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기관으로 설명된다. 학교는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가치와 문화를 전수함으로써 성인으로 준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개인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은 재능과 능력에 따른 사회적 상승 이동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물론 학교가 사회화, 훈련, 선발, 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며,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승 이동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은 학교가 매우 중립적인 기관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든다. 학교는 결코 중립적인 사회기관이 아니라 지배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정치적인 장(場)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지식과 가치와 신념 역시 객관적·중립적·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규범적·정치적 전제들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사회적 형성물이다. 따라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해석은 현실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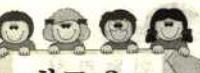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는 가족과 함께 세대간 노동력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초등교육의 수업료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교육이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지원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교육의 기회와 수준에 대한 접근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의 성원이나 전문직이나 사무직의 정신노동자는 고급 사립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을 거쳐 육성되는 반면, 육체노동자는 일반화된 대중교육기관을 통해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노동력으로 재생산된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위계 구조에 대응하는 차등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이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개개인은 불평등한 경제적 위치로 할당된다. 계급적·사회적 지위는 아동의 출신 성분에 따라 곧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때 학교의 졸업장은 기술과 지식의 습득 정도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증표의 구실을 함으로써, 학력에 따라 분절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등적인 지위의 획득과 그에 따른 차등적인 소득과 위세를 보증해 주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력이 높다고 해서 곧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거나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 학력은 소득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며,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기득권집단이 특정 직업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해 자체의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학위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학위와 무관하던 직업에서도 학위소지자들을 요구하게 되는 학위의 평가절하가 단행된다. 이처럼 교육경쟁이 심화될수록 학생으로서의 아동들이 수행해야 하는 학습노동의 강도는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개인의 재능에 따른 출세를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학력은 이러한 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증표로서 기능한다.

2) 통제기관으로서의 학교

학교는 명시적·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는 학력이 곧 계급의 존재나 자원의 불평등과는 무관한 개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지표이며 개인의 업적에 따라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학생들과 그들이 속한 계급으로 하여금 학력에 따른 차별화된 위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오인’(誤認)하도록 만드는 상징폭력을 행사한다. 상징폭력은 특정 집단(혹은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지배의 질서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듦으로써 기존 질서를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고도의 지배체계이다. 이것이 폭력인 이유는 학교에서 매개되고 전수되는 지식이 결코 중립적·보편적이지도 않으며, 경쟁의 과정도 결코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에서 전수되는 문화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에게 유리한 것이며, 그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학교는 계급들간의 불평등한 문화자본의 분배 구조를 재생산함으로써, 계급들간의 권력관계의 구조 및 상징관계의 구조도 재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정한 경쟁의 과정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인은 학교를 통해 지식과 가치와 의미의 분배와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학교의 공식적인 지식체계’는 통제의 한 형태이다. 학교는 ‘교과서’라는 독점적인 지식의 분배체계를 통해 공인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참고서나 시청각 교재 등과 같은 교육상품을 선정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식의 내용을 선별한다. ‘시험’이라는 서열화 기제는 이러한 공식적인 지식의 권위를 정규적으로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이미 정해진 답을 기술하고 평가받는 과정은 학생이 지식과 의미의 창조자가 아니라, 학교가 공인하여 분배해주는 지식의 수용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하게 된다. 학교가 분배하는 지식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행위는 곧 학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학교는 ‘정당한’ 것으로—우리 모두가 ‘배워야만 하는’ 것으로—생각되는 지식을 보존 분배함으로써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문화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는 명시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지식과 의미를 통제하며, 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존 체제와 불평등 질서에 대한 복종의 태도와 성향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학교의 일상적인 규칙이나 교사의 언어와 태도, 학교의 공간적 배치나 위계질서 등을 통해 학교는 복종이나 인내, 시간 엄수와 근면 등의 규범 또는 성향을 길러낸다. 학교내 구성원들간의 엄격한 위계질서는 복종의 태도와 침묵의 문화를 양산하고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교장이 교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는 특정한 행동양식이나 의무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 또한 교사와 정해진 시간표의 지시에 복종하고 교사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 행동은 학교에서 가장 칭찬받는 행동 가운데 하나이다.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교실수업에서 느끼는 의문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는다. 학교에서는 공부할 내용뿐만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모든 아동은 지정된 내용을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동시에 공부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계속해서 어떤 공부나 작업에 몰두할 경우에도 지정된 시간이 끝나면 그 작업은 멈추어야만 한다. 이처럼 학교에서 강조되는 것은 학교가 요구하는 특정한 태도나 가치에 대한 복종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시킴으로써 사회통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 학교는 지배문화에 적합한 의미와 가치관을 가르침으로써 현존하는 경제적·문화적 체제와는 다른 체제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며,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은폐하고, 지배질서를 자연적 질서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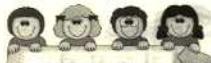
3) 교문앞에 멈춰 선 인권

① 학교규율과 인권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아동은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 속에서 ‘인간’이 아닌 ‘학생’이라는 신분적 굴레에 얹매여 살아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식의 입시문화, 그리고 ‘순종 천국, 반항지옥’의 권위주의적 통제질서가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는 아동을 ‘교육’한다는 명분하에 ‘학생다움’을 규정한 교칙과 각종 생활 규정, 교사·재량행위 등을 통해 일상적 검열과 통제, 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권리가 교문 앞에 멈춰서 있다.

학교에서 강제되는 규율은 해서는 안되는 것(결석, 지각, 태만, 무례한 태도,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과 하면 좋은 것(시간 엄수, 규칙적인 생활, 성실,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 단정한 자세)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이를 상별체제와 결합시킴으로써, 아이들의 행동을 규격화·표준화·획일화시킨다. 학교의 경직된 규율과 질서로부터의 일탈은 곧바로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일상적 통제를 통해 순종적인 인간을 만들어냄으로써, 학교는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지 않는 순종적이고 동질화된 국민과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필요로 하는 순종적인 노동력을 길러내는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오랫동안의 법적·교육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체벌은 여전히 일시적 통제효과를 달성하고 학교규율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현장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공부에 전념하라는 자극을 준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성적 공개, 성적에 따른 임원 후보 자격 제한, 교문 앞 등교지도, 불시의 소지품검사, 속옷검사, 두발검사 등 일상화된 검열과 통제를 통해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의 권리, ‘몸’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소지품검사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며,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러한 검열과 통제의 과정은 흔히 아동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언어폭력과 비교육적 폭력과 결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규율이나 부당한 규율의 집행에 학생들이 이를 제기하고 수정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징계절차와 인권

단순한 체벌이나 벌점, 교내봉사활동에서부터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내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변론권이나 징계 사유의 사전 통지 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 학생들’을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위탁하여 특별교육하겠다는 발상⁵⁾은 ‘형별’의 자의적 집행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위험한 아동’, 즉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거나 불량하거나 반항적인 아동, 즉 이른바 ‘지위비행자’(status offenders)들을 통제하고, 격리 수용하여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설이 설립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였다. 이러한 시설들은 아동복지를 위한 보호적 기능과 아동범죄의 처벌을 위한 형벌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감금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형법에 의하지 않은 감금의 원리’가 현실적으로는 폐지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아동수용시설이다. 이러한 아동수용시설은 가부장적 국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형법을 위반하지 않은 지위비행자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절차적 측면에서도 교육적 비형식성이 강조됨에 따라 성인에게는 인정되는 헌법상의 절차적 권리, 즉 변호인 선임권과 Mukibun의 인정과 그것의 사전 고지, 대심(對審), 재판의 공개 원칙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③ 학교운영 참여와 인권

위와 같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규율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활발하게 개진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아직도 상명하달식의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으며, 마치 ‘동맥경화증’에 걸린 듯 아이들의 의견이 위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는 막혀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참여를 독려하는 열린 의사결정구조를 실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의 잘못된 행정이나 교사들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교내 언론활동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만드는 교지(校誌)나 학교신문의 내용, 심지어 학교통신방에 올라오는 글까지도 학교의 검열대상이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매체를 통해 알리게 될 경우 불만이 확산되거나 학교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98년 전라도

5)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이러한 위탁 특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 방안을 이번에 소년원법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에 계류중이다.



고등학교의 임유빈군이 청와대 게시판에 학교의 개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올렸다가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당한 사건이나 2003년 용화여고의 허성혜 학생이 학교의 비리를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퇴학까지 당했던 사건 등은 학교가 아이들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통한 집단적 의사표현도 제대로 보장될 리 없다. 상문고나 정의여중, 경기여상 등 사학재단 비리문제를 둘러싼 학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징계처분을 면키 어려우며, 대다수의 학교가 학교장의 허락없이 학교밖 집회나 행사에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칙을 갖고 있기도 하다.

④ 종교·사상의 자유

학교추첨제도에 따른 대표적인 폐해 사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배당받은 종교계 사립학교설립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이 원치않는 종교교육까지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특정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학교에서 강요받기도 하며, 이를 거부한 학생들은 아예 입학 자체가 거부되거나 재적 처리를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최근 의정부시 영석 고등학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학생이 건전하지 못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이유(그 학생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라며 거부하였다)⁶⁾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나아가 국정 교과서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행 교과서 제도는 국가가 유일한 진리의 심판자로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획일적 가치를 주입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정 교과서제도는 사상·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본보기로서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

4) 반인권적 사회질서와 학교규범의 이중주

나아가 학교는 다른 사회적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반인권적 사회질서와 규범, 문화가 스며들고 옹호되는 주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특정한 방향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며, 특정한 성역할을 내면화하기도 하며, 폭력적 경험을 학습하기도 한다.

6)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1943년에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종교·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승인하였으며, 이 판례는 1990년대 중반 보스턴 라틴스쿨의 한 12살짜리 학생이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충성 서약을 거부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권리를 옹호하는 중요한 베일목이 되어주었다.



① 개인적 정체성과 학교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으로, 아동이라는 연령의 계서제 하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적 집단으로서 인식되고 통제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으로서 특정한 성역할 규범을 학습받기도 하며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도록 이성애중심적 규범을 강요받기도 한다.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차별적인 사회화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도 학교질서를 양성평등적으로 재구성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나 친구들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대두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동성애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할 무렵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주로는 교사와 친구들이 동성애를 인식하는 태도)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숨기도록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⁷⁾, 아웃팅에 대한 위협으로 학교를 떠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② 왕따와 학교폭력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는 환상은 최근 학생들 사이의 왕따피해를 비롯한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심정적 일체감을 형성한 또래집단이 한 개인에 대해 집단적으로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학적 쾌감을 얻는 왕따와 빵뜯기에서부터 협박, 집단구타 등에 이르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안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인공포증, 학교거부증, 우울증세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왕따문제는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학교내에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많은 학생들이 자신도 왕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 사이의 폭력문제는 아이들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과 실업, 해체 위기의 가정 문제, 가정폭력이나 교사체벌로부터 연유한 적대감과 공격성의 증가, 학교현장을 비롯한 사회구조가 제시하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모델,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문화 등이 함께 결합하여

7) 2003년 4월 자살한 동성애자 윤모 씨의 경우도 고등학교에서 커밍아웃을 한 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폭력은 “눈에 안 보이는” 폭력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③ 왜곡된 고정관념의 내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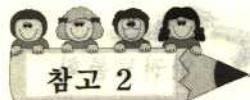
학생들이 이 사회가 제공하는 특정한 규범이나 고정관념을 내면화하면서 성장하게 됨에 따라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가 그러한 고정관념을 지지 혹은 강화함에 따라 고민을 나누고 위로받으며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왜곡된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다.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은 학생들이 외모에 따라 친구를 판단하고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상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혼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부정하도록 만들기도 한다.⁸⁾ 나아가 폭력을 쉽게 용인하고 가족 내부의 고통은 그 가족 안에서 책임져야 할 뜻이라고 말하는 가족주의는 가정폭력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가족 외의 성원들에게는 가정폭력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폭력의 굴레 속에 내버려두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5.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

“교육은 바로 그것이 다른 이해들을 위해 사용될 위험에 끊임없이 놓이게 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해방의 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계급착취, 성별, 그리고 인종적 억압에 의해 굴절된 사회에서, 그리고 전쟁과 환경파괴의 만성적인 위험 속에서도 교육이 가치로울 수 있는 유일한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해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의미에서이다. 학교의 본분은 위험하고 병든 세계를 개혁시키기 위한 지식, 기술,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교육의 과정과 해방의 과정은 같은 것이다.” – Connell, R. W. et al., *Making the Difference*, Sydney: George Allen & Unwin, 1982

교육의 과정이 곧 해방의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교사의 존재 때문이다. 교사는 체제와 학교제도의 대리인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억압적인 현실 구조 내에서도 학생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일으켜세울 수도 있는 존재이다. 그러하기에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 구조의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있게 탐색하지 않으면 안되며, 현실 구조와 맞서

8)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 부모-자녀로 구성된 정상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에 짓눌려 있으면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부모의 부재 등의 상황을 숨기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개인적 불행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사회적 모순임을 일깨워주는 일은 교사의 몫이며, 학생이 스스로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도 교사의 몫이다.

또한 학생의 해방을 일구어내는 과정은 동시에 교사의 해방을 일구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교내에서 평교사들을 억압하는 구조는 학생을 억압하는 구조와 닮아 있다. 따라서 교사는 억압적 학교제도를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바꾸어나가는 데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대개 아이들의 불만은 구조 자체에 의심을 품기보다는 직접적인 가해자의 얼굴을 한 ‘교사집단 전체’를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들도 ‘대리자’일 뿐 불합리한 학교구조와 문화의 희생자라는 걸 간파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없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존재라는 것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사들로부터 벽을 쌓는다. 소통은 단절되고 각자 따로 논다. 기대하면 상처도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다가서고자 하는 교사도, 그들과 함께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사도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아이들의 의미세계에서 추방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의 의미세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학생은 교사의 행동과 태도, 언어로부터 삶을 배우고 진정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성찰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교육과정을 스스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사는 해방의 교육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야만을 택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발의 경과

- 05년 11월 초초초안 작성(당 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최순영 의원실)
- 초초초안 검토
 - 1차 워크샵: 05년 12월 2일(금). 범국민교육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관동학운협. 문화연대는 문서로.
 - 2차 워크샵: 05년 12월 9일(금). 전교조 학청위, 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
⇒ 워크샵 결과들에 바탕하여 초초안 작성(05년 12월 중순).
- 초초안 검토
 - 06년 1월 5일(목) 학생 워크샵
 - 06년 1월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조례(초안) 받음.
 - 06년 1월 인권운동사랑방의 검토 문서 받음.
 - 06년 1월 국회 법제실 검토의견 받음.
⇒ 그 내용들에 바탕하여 초안 작성(06년 2월 10일).
- 초안 검토
 - 06년 2월 11일(토) 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 받음.
 - 06년 2월 14일(화) 청소년 토론회 개최.
 - 06년 2월 16일 전교조 정책실 의견 받음.
 - 06년 2월 16일 당 청소년위원회 워크샵.
⇒ 그 내용들에 바탕하여 법안 확정(06년 2월 20일)
- 당내 의결절차 진행(정책위 실국장회의 ⇒ 최고위원회 또는 의총).
 - 06년 3월 2일 최고위원회의 법안 확정
 - 06년 3월 8일 법안발의 기자회견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 다.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개정).
- 라.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 마.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바.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 사.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 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
 2.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4. 총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 ⑤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학교의 장 및 학교자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자치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총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③ 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않고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학생인권 보장)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4(인권교육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자치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직원대표·학부모대표·학생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명서>

오병현 학생의 징계를 철회하고
동성고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정당한 인권보장을 요구한 오병현 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린 동성고와 이러한 사태를 무책임하게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청의 처사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미 우리는 동성고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7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병현 학생 주장의 정당함과 징계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징계시도 철회와 인권실태개선을 동성고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빗속에서의 우리의 외침은 무참히 짓밟혔다. 몇 시간 뒤 징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특별교육이수가 무엇인가. 학생에 대한 징계종류 중 퇴학처분 전 단계인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학생을 외부에 있는 기관으로 보내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징계내용을 오병현 학생에게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각종 규정 불응과 정신적인 휴식 필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숨 막히는 학교의 인권탄압 현실을 밝힌 학생이 정신의 안정을 위해 휴양을 받아야 할 대상인가?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용감하게 실천한 학생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온 학교’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오로지 ‘분란’의 책임을 오병현 학생에게 뒤집어씌워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이번 징계는 오병현 학생의 저항이 다른 학생들에게 파급되지 못하게 오병현 학생을 학교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비교교육적인 처사이다.

징계절차에 대한 부당함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18조 2항에서는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고자 할 때 부모나 학생에게 적절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고 측은 “교칙에서 학생의 소명기회에 대한 조항이 없기에 학생의 소명기회를 줄 수 없다.”,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변론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등의 억지를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그런 억지논리가 인권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게 되자 동성고는 주먹구구식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날 아무런 학칙 개정 없이, 오병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징계위원회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했다. 이처럼 이번 징계는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기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병현 학생에게 이미 내려졌던 ‘교내 봉사 3일’의 징계 역시 학생의 진술 대신 강압적인 요구로 쓴 경위서에 기반하여 징계가 이루어져 그 절차에 대해 학생과 인권단체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징계사유인 두발규정에 대해서도 오병현 학생은 1인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학교는 두발규정을 개정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학생에게 ‘용의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사유와 함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징계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채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유까지 덧붙여 ‘특별교육 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성숙한 민주시민과 인권의식을 갖춘 학생을 양성해야 할 학교가 취할 올바른 행동이 결코 아니다. 또한 학생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소집 사유 가운데 일부(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허락받지 않은 내용 유포,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징계 사유를 축소하여 발표하였지만, 이번 징계가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동성고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오병현 학생이 1인시위에 나섰을 때, 인권단체들은 동성고 담당 장학사에게 사태파악과 시정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는 피해자인 학생과의 아무런 접촉 없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부장이나 교장과의 통화·면담만을 했으며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권한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결정 과정과 문제가 되고 있는 두발규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해 책임 회피와 학교 측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낮은 인권의식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규탄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인권을 무시하고 반교육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와 이를 방조한 교육청을. 이게 어찌 동성고 만의 문제인가?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여러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를 방관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아무리 학교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상급단위로서 교육청의 관리감독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권보장을 요구했던 학생이 중징계를 받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한 일은 무엇인가? 아무런, 그리고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교육청의 직무유기이다.

우리는 믿는다. 닦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것을. 아무리 학교가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태도로 버틸지라도 결코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는 거대한 인권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대책위는 그 흐름을 더욱더 촉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을 선언한다.

1.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현 학생에 대한 보복성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현 학생이 제기한 인권침해행위들을 전면 중단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에 대하여 즉각 개정에 나서라.
1. 서울시 교육청은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엄중한 지도 감독을 행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06년 7월 7일

오병현 학생 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공동체 나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중고등학생연합 학생자치사업본부,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